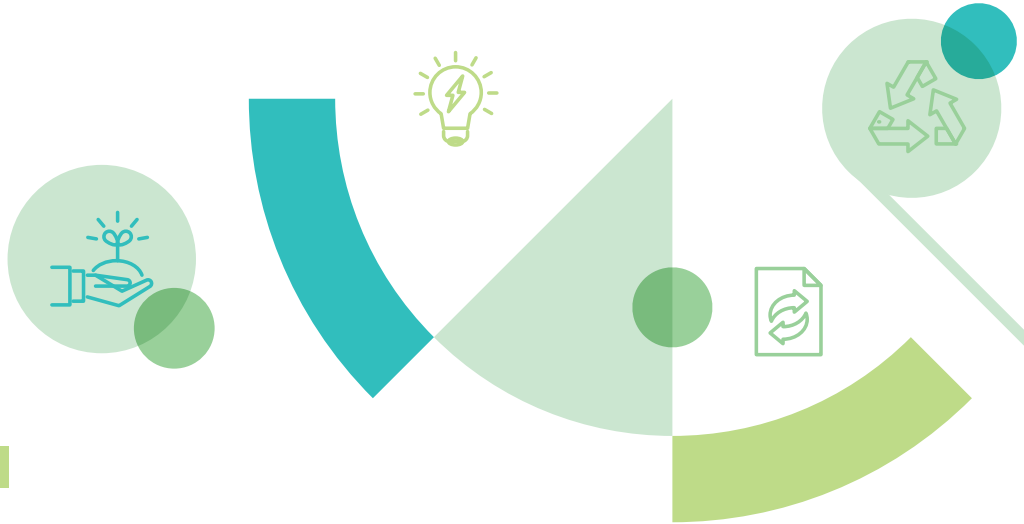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

2023. 02.



- ◇ 본 해설서는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제도”와 관련하여 순환자원의 인정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의 절차 등을 풀어 쓴 해설서로써,
-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는 인정기관(유역·지방환경청)·기술검토키관(한국환경공단 등)이 순환자원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한 참고자료이며,
 - 해설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우선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 ◇ 본 해설서는 2023년 1월 개정일자를 기준으로 유효한 법령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바,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해당 개정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제·개정 이력

연번	구분	제·개정일자	주요내용
1	제정	2018.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법률 제14229호, 2016.5.29. 공포, 2018.1.1. 시행) -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업무를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 “순환자원 인정” 제도 및 실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 마련·배포
2	개정	2023.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및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개정·시행('23.1.1.) 반영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7호)」 개정·시행('22.5.4.) 내용 반영

Contents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

Chapter I 일반사항 1

1 일반사항 3

- 1) 제도 도입배경 3
- 2) 순환자원 인정절차·방법 간소화 등 제도개선 현황('21~'22) 4
- 3) 순환자원 인정제도 주요내용 8
 - 가) 순환자원의 정의 8
 - 나)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8
 - 다) 순환자원의 제외대상 폐기물 9
 - 라) 순환자원의 신청 및 인정기관 10
 - 마) 순환자원의 인정신청 절차·방법 11
 - 바) 순환자원 인정 수수료 14
 - 사) 순환자원 인정 효과 14

Chapter II 순환자원 인정기준 15

1 순환자원 인정기준 17

- 1) 순환자원 인정기준 17

2 순환자원 인정기준별 해설 18

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18

- 1) 고려사항 18
- 2) 고려사항별 해설 18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 22



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라)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35
마)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4
나.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46
1) 고려사항	46
2) 고려사항별 해설	46
가)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46
나) 유가성이 있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47
다) 시장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47
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48
1) 고려사항	48
2) 고려사항 해설	48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48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48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52
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53

Chapter **Ⅲ** **순환자원 인정신청** 61

1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 63

가. 순환자원의 인정신청 신청자격 64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64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5
-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66
-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68

나. 2개 이상의 신청인 공동 인정신청 69

다.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제한되는 물질 또는 물건 70

라. 순환자원의 인정절차·방법 등 간소화 대상 폐기물 70

마.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서 작성 71

바. 순환자원 재인정 신청서 작성 73

사. 순환자원 (재)인정 신청서 첨부서류 75

- 1)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75
- 2) 순환자원 재인정 신청 시 첨부할 서류 76
- 3) 순환자원 인정절차·방법 등 간소화 대상 제출 생략 서류 76

2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확인 77

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 여부 확인 77

나. 순환자원 인정신청 제한 물질 또는 물건 78

다.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류 누락 검토 78

1 서류검토	83
1) 인정신청 폐기물의 종류, 사용용도 및 기준 등 검토	84
2) 인정신청 폐기물의 유해물질 등 환경안정성 검토	85
3) 인정신청 폐기물의 유상거래 여부 검토	85
4)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 검토	85
5) 1)부터 4)까지의 서류 검토결과 신청인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순환자원의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음	85
2 현장조사	86
1) 육안검사 및 공정검사 등 현장조사	86
2) 계획수립	86
3) 조사방법	87
4) 이물질 및 유해물질 등의 함유여부에 대한 분석	88
3 기술검토	92
가. 기술검토 절차	92
1) 기술검토 의뢰	93
2) 기술검토 계획수립	93
3) 현장조사 일정통보	93
4) 현장조사 실시 및 이물질·유해물질 등 함량 분석 등	93
5) 기술검토보고서 작성·제출	94
나. 기술검토보고서 작성방법 등	94
1)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94
2) 기술검토보고서 작성방법	95

4 전문가 자문	96
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96
1) 자문위원회의 구성	96
2) 자문위원회 운영	97
나. 전문가 의견 생략 대상	97
5 인정여부 결정	98
1) 순환자원의 인정여부 결정	98
2) 순환자원의 인정여부 결정 통지	99
3) 순환자원 인정결과 통보 및 게시	99
4) 순환자원 인정서 발급	100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102
6)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103

Chapter



순환자원 사후관리

105

1 순환자원의 생산·판매실적 보고	107
1)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제출	107
2)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작성방법	108
2 출입검사 등 사후관리	109
1)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기	109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절차	109
※ 순환자원 인정업체 현장점검표(예시)	111



3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113
1)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13
2)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절차	114
3)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통보	114
4) 인정이 취소된 자의 조치사항	115
5) 인정취소에 따른 조치절차	117
4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118
1)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118
2)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청문절차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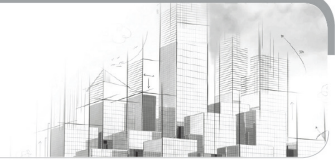
Chapter **VI** **부 록**

1. 2개 이상 신청인이 같은 종류 생활폐기물 일괄신청 절차 및 방법 (커피전문점 커피찌꺼기를 예시로 작성)	125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135
3. 자원순환기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141
4.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156
5.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167
6. 순환자원 인정제도 Q&A	170
7. 순환자원 인정 관련 기관별 연락처	181

제 1 장

일반사항

1 | 일반사항



1) 제도 도입배경

- ✔ 우리나라는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자원의 경우 환경에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아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사용 등 과정에서 폐기물로 관리되면서 자원으로서의 인식이나 품질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 EU는 2008년부터 “폐기물종료제도(End of waste)”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①재활용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주고, ②폐기물 처리허가 등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며, ③안정적인 2차 원자재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¹⁾받고 있다.
- ✔ 이에, 우리나라도 자원의 순환이용을 제한하는 규제혁신을 통하여 고품질의 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4229호)」을 제정(2016.5.29.)하여 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이 국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여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p

2) 순환자원 인정절차·방법 간소화 등 제도개선 현황('21~'22)

☑ 왕겨 및 쌀겨(2021.08.31.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 개선내용

〈 개선방안 시행 전후 비교 〉

구 분	현 행	개 선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고 대상	·불필요
② 순환자원 인정신청 자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필요	·불필요
③ 순환자원 인정절차	·서류심사 ·현장조사(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서류심사 ·현장조사(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④ 인계·인수서 작성 (순환자원 인정 시까)	·작성 필요	·불필요
⑤ 활용 가능용도 (순환자원 인정 시)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 ([왕겨]철강보온재, [쌀겨]화장품 불가)	·제한 없음 (매립만 제한)
⑥ 유통 방식 (순환자원 인정 시)	·직접 공급만 가능 (RPC→사용자)	·간접 공급도 가능 (RPC→유통업자→사용자)

☑ 커피찌꺼기(2022.3.11.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 개선내용

〈 개선방안 시행 전후 비교 〉

구 분	현 행	개 선
① 순환자원 인정신청자격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 신청 가능	·생활폐기물배출자도 신청 가능
②③ 활용 가능용도 (순환자원 인정 시)	·연료로 사용 시 인정 불가 ·사료, 비료 등으로 제한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 불가)	·바이오SRF로 사용 시 인정 가능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 인정

구 분	현 행	개 선
④ 유통방식 (순환자원 인정 시)	·직접 공급만 가능 (배출자→사용자)	·간접 공급도 가능 (배출자→유통업자→사용자) * 예: 카페→유통업자(보관 후 판매) →플라스틱제품 제조사
⑤ 순환자원 인정절차	·서류심사 ·현장조사 (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서류심사 ·현장조사 (①육안검사*, ②공정·설비 검사, ③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 성상·배출특성 등이 유사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일부 사업장 대상 육안검사 생략 가능
⑥ 일괄신청	·복수의 신청인이 소속된 단체·협회가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단체·협회의 관할 지방청에 신청 가능 * 단체·협회의 관할 지방청이 일괄접수 및 처리 하되, 현장조사 시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청 협조

- ☑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 및 인정절차 간소화 품목 추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3.1.1.)
 -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현 행	개 정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현 행	개 정
	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 4. (생 략)	2. ~ 4. (삭 제)
5.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6. ~ 9. (생 략)	6. ~ 9. (삭 제)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생략)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식물성 잔재물(사료 또는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7. -----(<u>「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u> -----)
<신 설>	8. <u>왕겨 및 쌀겨</u>
<신 설>	9. <u>커피찌꺼기</u>

- ✔ 순환자원 인정 지정 고시 제도 근거 신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공포, '22.12.31. 시행 '24.1.1)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품목 중 유해성이 없고
 - 유가성이 매우 높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품목에 대하여 순환자원 품목으로 지정 고시하여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제고

현 행	개 정
〈신 설〉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신 설〉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은 그와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의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지정·고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순환자원 인정제도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정의

- ✔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4호)
- ✔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나)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 ✔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은 인체 및 환경유해성, 경제성 등 법률에서 정한 2가지 기준과 소각·매립·해역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해당여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기준에 맞게 사용 등 2가지 기준을 포함하여 4개 기준으로 완화하였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22.12.30)·시행('23.1.1)]
- ※ 순환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한해 인정 가능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순환
자원의
인정
기준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 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폐기물 종류 관계없음)
- ③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해당 여부
-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
 -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
- ⑤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 ①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 ② 유가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 ③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지 여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②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다) 순환자원 인정 제외대상 폐기물

-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관리에 장기간 소요,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할 경우 환경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 또는 물건

순환자원 인정 제외대상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1.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라) 순환자원의 신청 및 인정기관(세부내용 63p~69p 참고)

(1) 순환자원 신청자 :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 신고규모 미만인 자 등

※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를 받은 업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한 후 그 사업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폐기물(중간가공폐기물 포함)이 순환자원 인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정 가능(「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순환자원 인정기관 : 7개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지방환경청장)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제2항]

- (생활·사업장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및 2항)

※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신청인이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공동 신청할 수 있음.

- (같은 종류 생활폐기물 2개 이상 신청인 공동신청) 대표인이 일괄하여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대표인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및 제3항)

※ 같은 종류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국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 유역·지방환경청별 관할 구역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마산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남해군,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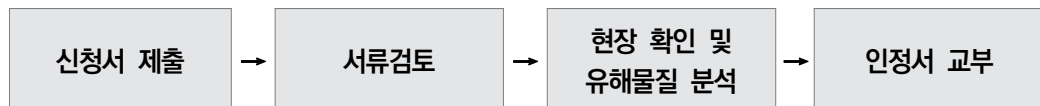
※ 경상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시·군·구에 따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상이

(3) 기술검토기관 :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

마) 순환자원의 인정신청 절차·방법

- ☑ 순환자원 최초 인정 후 3년, 2차 인정 이후 매 5년마다 순환자원 인정 재신청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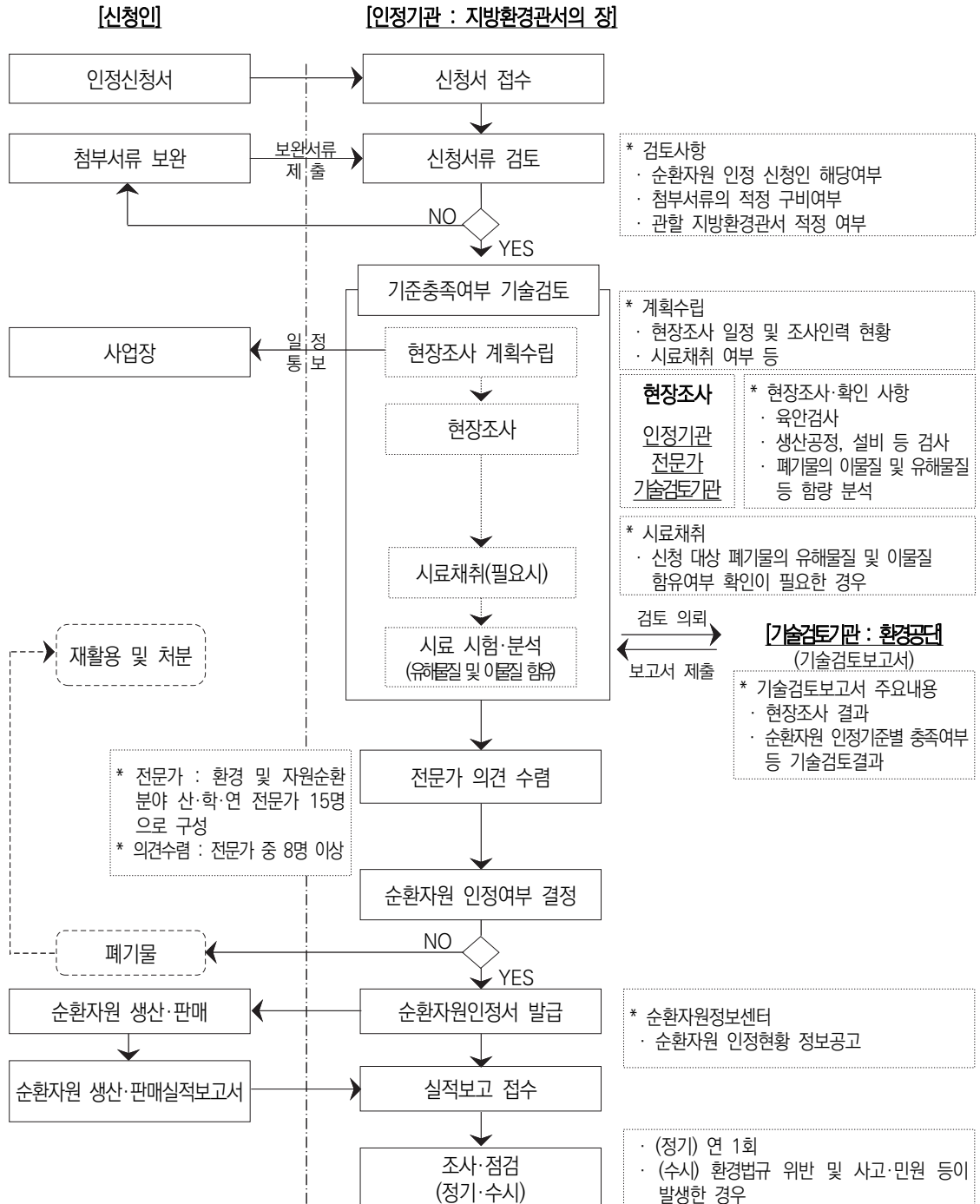
* 구비서류 적정성

* 현장 조사
* 유해물질 등 분석
* 전문가 자문

* (재) 인정
- 최초 인정 후: 3년
- 2차 이후: 5년

[순환자원 인정 세부절차]

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간소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바) 순환자원 인정 수수료

인정 수수료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40,000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15,000원

- ✔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정부에서 직접 심사하여 인정하는 업무로 환경 및 인체에 안전하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품질이 우수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유통·사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 품목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류(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수수료 산정·납부)

- 동일한 종류의 폐기물이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1개의 품목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예: 사업장폐기물 중 폐종이류(51-28-02)와 생활폐기물 중 폐지류(91-04-00)를 함께 신청한 경우 1개 품목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

-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2가지 이상의 폐기물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류되지 않은 품목별로 수수료 납부

[예시]

-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중 **제병부산물**, **제면부산물**, **제과부산물**, **콩비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종류별로 **수수료 납부**
- **폐합성수지류(51-03-01)** 중 PET, PP, PE, PS 등의 재질로 구분되는 폐합성수지를 신청하는 경우 **폐합성수지류 1건에 대해서 수수료 납부**

-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사업장 개소에 따라 수수료 납부

- ✔ 순환자원 인정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 환경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함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사) 순환자원 인정 효과(「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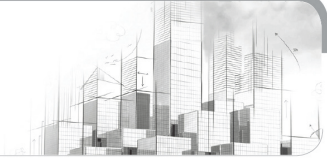
- ✔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3호)

제 2 장

순환자원 인정기준

1 | 순환자원 인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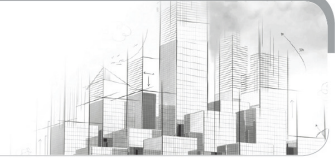
1) 순환자원 인정기준

- ☑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1항)
- ☑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은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2개의 기준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2개의 기준, 행정규칙으로 정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으로 구성

순환자원 인정기준

-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닐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2 | 순환자원 인정기준별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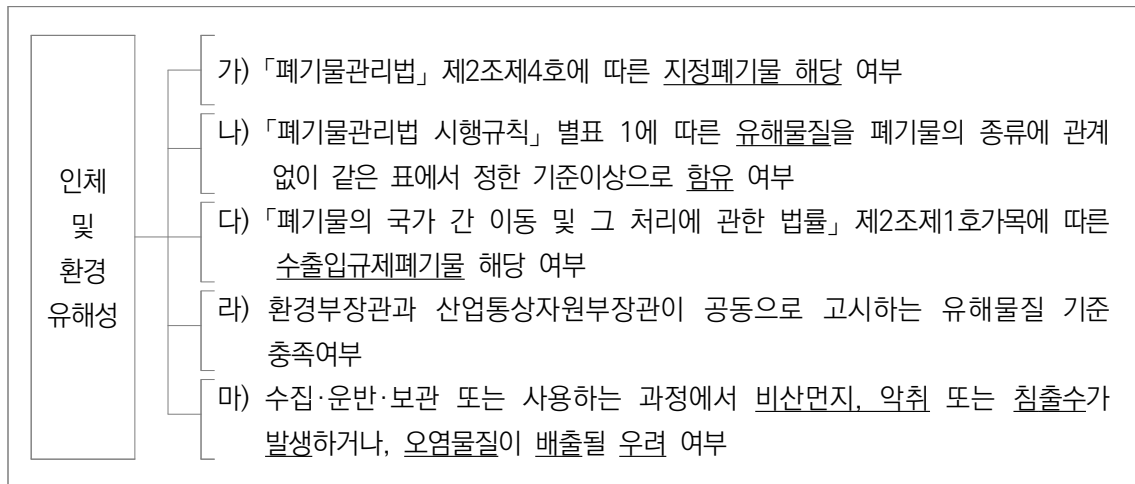


가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본 기준은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및 규제가 없어도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에 있어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것을 의미

1) 고려사항

- ☑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 고려사항별 해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설

-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검토

※ 지정폐기물의 해당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처리실적 자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전문분석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을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제4호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개정 2021. 3. 9.)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자. 삭제 <2020. 7. 21.>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페레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의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11. 수은폐기물
-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페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해설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으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검토

※ 유해물질 등의 함유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전문분석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별표 1에 기재된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아래의 물질 또는 물건은 **유해물질 분석서** 제출을 **생략**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절차·방법 간소화 대상 물질 또는 물건

① 폐지류, ②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③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④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합성수지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⑤ 폐의류, ⑥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원단조각, ⑦ 식물성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⑧ **왕겨 및 쌀겨**, ⑨ **커피찌꺼기**

참고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21. 4.30.)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연번	종 류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당 함유량	시험 기준
가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이상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이상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이상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이상	
바	6가크롬화합물	1.5 mg/L 이상	

연번	종 류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당 함유량	시험 기준
사	시아나화합물	1 mg/L 이상	
아	유기인화합물	1 mg/L 이상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mg/L 이상	
차	트리클로로에틸렌	0.3 mg/L 이상	
카	기름성분	5%(중량비 기준)이상	
타	그 외 환경부장관 고시물질	-	

2. 광채·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 나. 석면(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설

-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검토

참고법령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간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폐기물의 종류)제1항 “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의 폐기물을 말함.
 1.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1의 2. 협약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위 각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92호) 별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폐 기 물 명	비 고
가. 금속 관련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이라 한다)
(1)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 안티몬(Antimony) - 비소(Arsenic) - 베릴륨(Beryllium) - 카드뮴(Cadmium) - 납(Lead) - 수은(Mercury) - 셀레늄(Selenium) - 텔루륨(Tellurium) - 탈륨(Thallium) 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cally list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10)

폐 기 물 명	비 고
<p>(2)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 (Waste having as constituents or contaminants, excluding metal waste in massive form, any of the follow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티몬 화합물(Antimony ; antimony compounds) - 베릴륨 화합물(Beryllium ; beryllium compounds) - 카드뮴 화합물(Cadmium ; cadmium compounds) - 납화합물(Lead ; lead compounds) - 셀레늄화합물(Selenium ; selenium compounds) - 텔루륨 화합물(Tellurium ; Tellur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20)
<p>(3)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 (Wastes having as constituents or contaminants any of the follow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소화합물(Arsenic ; arsenic compounds) - 수은화합물(Mercury ; mercury compounds) - 탈륨화합물(Thallium ; thall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30)
<p>(4)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Wastes having as constituents any of the follow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40)
<p>(5) 갈바닉전기 슬러지(Galvanic sludges)</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50)
<p>(6) 금속 세척 시 발생하는 폐용액 (Waste liquors from the pickling of metals)</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60)
<p>(7) 자로사이트, 적철광 등과 같은 슬러지, 분진 및 아연가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침출 잔재물 (Leaching residues from zinc processing, dust and sludges such as jarosite, hematite, etc.)</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70)
<p>(8) 폐 아연 잔재물(바젤협약 부속서III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납과 카드뮴을 포함) (Waste zinc residues not included on list B, containing lead and cadmium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80)
<p>(9) 절연구리선 소각잔재 (Ashes from the incineration of insulated copper wire)</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090)
<p>(10) 동제련 가스정제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분진 및 잔재물 (Dusts and residues from gas cleaning systems of copper smelters)</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00)

폐 기 물 명	비 고
(11)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전해용액 (Spent electrolytic solutions from copper electrorefining and electrowinning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10)
(12) 동전기정련 및 전기건조공정의 전해액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양극 제외) (Waste sludges, excluding anode slimes, from electrolyte purification systems in copper electrorefining and electrowinning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20)
(13)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 (Spent etching solutions containing dissolved copper)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30)
(14) 폐염화구리 및 시안화구리 촉매 (Waste cupric chloride and copper cyanide catalys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40)
(15)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하는 고가금속의 재 (Precious metal ash from incineration of printed circuit boards not includ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50)
(16)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배터리 (Waste lead-acid batteries, whole or crushed)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60)
(17) 미분류된 폐배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배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 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배터리는 포함) (Unsorted waste batteries excluding mixtures of only list B batteries. Waste batteries not specified on list B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o render them hazardou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70)
(18)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배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축전기 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II의 특성을 지닐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자 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assemblies or scrap containing components such as accumulators and other batteries included on list A, mercury-switches, glass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 and PCB-capacitors, or contaminated with Annex I constituents(e.g. cadmium, mercury, lead, polychlorinated biphenyl) to an extent that they possess any of the characteristics contained in Annex III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111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80)
(19)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부속서 I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으로 코팅 또는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 (Waste metal cables coated or insulated with plastics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coal tar, PCB, lead, cadmium, other organohalogen compounds or other Annex I constituents to an extent that they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1190)

폐기물명	비고
<p>(20)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하는 불순, Scalings, 기타폐기물 Dross, scalings and other wastes from the manufacture of iron and steel) (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 (This listing includes wastes in the form of ash, residue, slag, dross, skimming, scaling dust, powder, sludge and cake, unless a material is expressly listed elsewhere)</p>	OECD황색폐기물 (AA010)
<p>(21) 바나듐재와 잔재물 (Vanadium ashes and residues)</p>	OECD황색폐기물 (AA060)
<p>(22) 마그네슘 폐기물과 스크랩(다량의 물, 가연성 기스와 접촉할 경우 가연성, 발연성일 것) (Magnesium waste and scrap that is flammable, pyrophoric or emits, upon contact with water, flammable gases in dangerous quantities)</p>	OECD황색폐기물 (AA190)
<p>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 containing principally in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organic materials) (1)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화유리 (Glass waste from cathode-ray tubes and other activated glasses)</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10)
<p>(2)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 (Waste inorganic fluorine compounds in the form of liquids or sludge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20)
<p>(3) 폐촉매 (Waste catalysts but excluding such waste specified on list B)</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30)
<p>(4)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 (Waste gypsum arising from chemical industry processes, when containing Annex I constituents to the extent that it exhibits an Annex III hazardous characteristic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080]))</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40)
<p>(5) 폐석면(분진 및 섬유) (Waste asbestos (dusts and fibers))</p>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50)
<p>(6) 석면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세라믹계 섬유 (Ceramic based fibers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asbestos)</p>	OECD황색폐기물(RB020)

폐 기 물 명	비 고
(7)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부유성 석탄재 (Coal-fired power plant fly-ash containing Annex I sub- stance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characteristic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05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2060)
(8) 금속표면처리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무시안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 (Wastes from non-cyanide based systems which arise from surface treatment of metals)	OECD황색폐기물 (AB030)
(9) 주물공정과정에서 사용된 모래 (Sands used in foundry operations)	OECD황색폐기물 (AB070)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할로겐화합물 (Inorganic halide compound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ECD황색폐기물 (AB120)
(11) 페블라스트사 (Used blasting grit)	OECD황색폐기물 (AB130)
(12) 정제되지 않는 황산칼슘과 연도가스 탈황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칼슘 (Unrefined calcium sulphite and calcium sulphate from flue gas desulphurisation(FGD))	OECD황색폐기물 (AB150)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containing principally organic constituents, which may contain metals and inorganic materials)	
(1) 석유코크스 및 역청탄의 제조, 처리시 발생된 폐기물 (Waste from the production or processing of petroleum coke and bitume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10)
(2)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 (Waste mineral oils unfit for their originally intended us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20)
(3) 납성분 녹킹방지제 화합물 슬러지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leaded anti-knock compound sludg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30)
(4) 열전도 유체 (Waste thermal (heat transfer) flui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40)
(5)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 시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sins, latex, plasticizers, glues /adhesives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402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50)
(6) 폐질산섬유소 (Waste nitrocellulos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60)

폐 기 물 명	비 고
(7) 페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 (Waste phenols, phenol compounds including chloro-phenol in the form or liquids or sludg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70)
(8) 페에테르 (Waste ethers not including those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80)
(9)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폐가족물품 분진, 재, 슬러지 및 분말 (Waste leather dust, ash, sludges and flours when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310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090)
(10) 가죽물품 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 폐기물 (6가크롬 또는 생체 독성물질을 함유한 것) (Waste paring and other waste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not suitable for the manufacture of leather articles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309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00)
(11) 6가크롬화합물 또는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물질 함유한 양피처리과정 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죽 폐기물 (Fellmongery wastes containing hexavalent chromium compounds or biocides or infectious substances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311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10)
(12)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편 (Fluff-light fraction from shredding)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20)
(13) 폐유기인화합물 (Waste organic phosphorous compound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30)
(14) 비할로겐화 폐유기용제 (Waste non-halogenated organic solvent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40)
(15) 할로겐화 폐유기용제 (Waste halogenated organic solven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50)
(16)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 할로겐 또는 비할 로겐화 증류잔재 (Waste halogenated or unhalogenated non-aqueous distillation residues arising from organic solvent recovery operat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60)
(17)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 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클로르하이드린)생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of aliphatic halogenated hydrocarbons (such as chloromethane, dichloro-ethane, vinyl chloride, vinylidene chloride, allyl chloride and epichlorhydri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70)

폐 기 물 명	비 고
<p>(18) 50mg/kg이상의 응축수준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를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물질 및 물품 (Wastes, substances and articles containing, consisting of or contaminated with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polychlorinated terphenyl (PCT), polychlorinated naphthalene (PCN), polybrominated biphenyl (PBB), or any other polybrominated analogues of these compounds, at a concentration level of 50mg/kg or more)</p>	<p>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80)</p>
<p>(19) 유기물질의 정제, 증류 및 열분해 처리에서 발생하는 페타르잔재(아스팔트 시멘트 제외) (Waste tarry residues (excluding asphalt cements) arising from refining, distillation and any pyrolytic treatment of organic materials)</p>	<p>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190)</p>
<p>(20)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역청질의 아스팔트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s(asphalt waste) from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ntaining tar(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2130)</p>	<p>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3200)</p>
<p>(21)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폐기물 (Bituminous materials(asphalt waste)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p>	<p>OECD황색폐기물 (AC020)</p>
<p>(22) 압연유 (Hydraulic fluids)</p>	<p>OECD황색폐기물 (AC060)</p>
<p>(23) 브레이크액 (Brake fluids)</p>	<p>OECD황색폐기물 (AC070)</p>
<p>(24) 부동액 (Antifreeze fluids)</p>	<p>OECD황색폐기물 (AC080)</p>
<p>(25) 염화불화탄소 (Chlorofluorocabons)</p>	<p>OECD황색폐기물 (AC150)</p>
<p>(26) 할론(Halons)</p>	<p>OECD황색폐기물 (AC160)</p>
<p>(26)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 (Treated cork and wood wastes)</p>	<p>OECD황색폐기물 (AC170)</p>
<p>(27) 계면활성제 (Surface active agents (surfactants))</p>	<p>OECD황색폐기물 (AC250)</p>
<p>(28) 액상돼지거름; 배설물 (Liquid pig manure; faeces)</p>	<p>OECD황색폐기물 (AC260)</p>
<p>(29) 하수슬러지 (Sewage sludge)</p>	<p>OECD황색폐기물 (AC270)</p>

폐기물명	비고
라.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Wastes which may contain either inorganic or organic constituents)	
(1)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production, preparation and use of pharmaceutical product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10)
(2) 의약 및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Clinical and related wastes; that is wastes arising from medical, nursing, dental, veterinary, or similar practices, and wastes generated in hospitals or other facili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or treatment of patients, or research project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20)
(3)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biocides and phytopharmaceuticals, including waste pesticides and herbicides which are off-specification, out-dated, or unfit for their originally intended use)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30)
(4)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manufacture, formulation and use of wood-preserving chemical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40)
(5)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any of the following:) - 미량의 무기시아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 시안화물 (Inorganic cyanides, excepting precious-metal-bearing residues in solid form containing traces of inorganic cyanides) - 유기시아니화물 (Organic cyanid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50)
(6)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 (Waste oils/water, hydrocarbons/water mixtures, emulsion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60)
(7)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from the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inks, dyes, pigments, paints, lacquers, varnish excluding any such waste specified on list B(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 [B401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70)

폐기물명	비고
(8) 폭발성폐기물 (Wastes of an explosive nature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80)
(9) 폐산 또는 폐알칼리 용액 (Waste acidic or basic solution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corresponding entry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B212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090)
(10)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from industrial pollution control devices for cleaning of industrial off-gases but excluding such wastes specified on list B)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00)
(11)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any of the following:)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Any congener of polychlorinated dibenzo-furan)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Any congener of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10)
(12)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 (Wastes that contain, consist of or are contaminated with peroxide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20)
(13)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엔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 물질을 함유(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기엔 충분한 농도)하는 폐 포장 및 용기 (Wastes packages and containers containing Annex I substances in concentrations sufficient to exhibit Annex III hazard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30)
(14) 바젤협약 부속서 I의 범주에 해당하고 바젤협약 부속서 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이를 함유하는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 (Waste consisting of or containing off specification or out-dated chemicals corresponding to Annex I categories and exhibiting Annex III hazard characteristics)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40)

폐 기 물 명	비 고
(15) 조사연구, 개발 또는 교육활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은 신종의 폐 화학물질 (Waste chemical substances arising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or teaching activities which are not identified and/or are new and who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or the environment are not known)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50)
(16) 폐 활성탄 (Spent activated carbon not included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2060]))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60)
(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복사(reprographic) 및 사진 (photographic)용 화학물질 및 재료의 제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prographic and photographic chemicals and material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ECD황색폐기물 (AD090)
(18) 무시안시스템의 플라스틱 표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Wastes from non-cyanide based systems which arise from surface treatment of plastics)	OECD황색폐기물 (AD100)
(19) 이온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s)	OECD황색폐기물 (AD120)
(20)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 (Naturally occurring organic material used as a filter medium (such as bio-filters))	OECD황색폐기물 (AD150)
마. 기타	
(1)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 (Wastes collected from households)	바젤협약 부속서 II
(2)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 (Residues arising from the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s)	바젤협약 부속서 II
(3) 아래의 조건을 제외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말하며, 이러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의 것도 포함한다. (Plastic waste, including mixtures of such waste,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바젤협약 부속서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젤협약 제1조제1항(a)에 따른 유해폐기물로 간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별지 다목(21)에 제시된 관련 항목을 참조) (Plastic waste that is hazardous waste pursuant to paragraph 1 [a] of Article 1) 	

폐기물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에 열거된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Plastic waste listed below, provided it is destined for recycling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비할로겐화 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다음의 중합체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non-halogenated polym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polym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에틸렌(Polyethylene[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스티렌(Polystyrene[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A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s[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에테르(Polye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대부분이 한 종류의 경화수지 또는 축합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아래의 수지를 포함하나 이로 국한되지 않음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cured resin or condensation produ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s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Urea formaldehyde res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Phenol formaldehyde res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라민포름알데히드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폭시수지(Epoxy res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키드수지(Alkyd res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종류의 불화중합체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폐기물. 다만, 소비자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함 (Plastic waste almost exclusively consisting of one of the following fluorinated polymers, Post-consumer wastes are exclu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소화에틸렌/프로필렌(Perfluoroethylene/propylene[F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불소알콕시알칸(Perfluoroalkoxy alka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화비닐수지(Polyvinylfluoride[PV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e fluoride[PVDF]) 	

폐기물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로 이루어진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서 오염이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 유입이 거의 없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을 통한 각 물질의 구분된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Mixtures of plastic waste, consisting of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and/or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rovided they are destined for separate recycling of each material an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and almost free from contamination and other types of wastes) 	
<p>비고 : 1. 위 표의 폐기물 중 별표1의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또는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단, OECD 녹색폐기물 목록에 대한 사항은 OECD 국가 간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한다.)</p> <p>1의2. 제1호에서 특정된 품목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규정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3. 위 표 및 별표1에 수록된 폐기물의 명칭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문 및 영문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한다.</p>	

라)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53호)」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충족여부

해설

- ◇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제3조(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
 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참고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개정 2022. 11. 29.)

1. 공통기준 <생략>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가. <생략>

나.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1) R-3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3-1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 (2) <생략>

(3) 폐촉매로 **오산화바나듐, 삼산화몰리브덴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 중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산화물 중 오산화바나듐(V_2O_5)의 경우

① 바나듐: 무게비율 15.0퍼센트 이상

② 기름성분: 불검출

(나) 산화물 중 삼산화몰리브덴(MoO_3)의 경우

① 몰리브덴: 무게비율 30.0퍼센트 이상

② 기름성분: 불검출

나) R-3-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생략>

다) R-3-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생략>

라) R-3-4 유형의 재활용 기준 <생략>

마) R-3-5 유형의 재활용 기준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R-4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 (3) <생략>

(4)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급냉, 수쇄·풍쇄 등을 통한 파쇄 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시멘트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함량단위: mg/kg)

구분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①동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3,200미만	10,000미만	100미만	900미만	2.0미만
②아연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7,000미만	14,000미만	60미만	500미만	2.0미만
③그 외의 경우	1,000미만	3,000미만	60미만	500미만	2.0미만

(나) <생략>

(5) 비산재, 바닥재 등 소각재와 그 잔재물이나 보크사이트 잔재물[적토(赤土),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처리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가) 강열감량(強烈感量)은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용출기준

(단위: mg/L)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10 이내
시안화합물	0.20 이내
염소화합물	250.0 이내

비고

- 염소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등의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금속 측정을 위한 용출조작을 한 후 해당 용출용액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염소이온 농도값을 따른다.
- 고화제 제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는 소각재 및 그 화합물과 다른 원료물질을 혼합하여 재활용하는 단계에서 실험한 결과 기준 농도 이내이면 용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수산화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보크사이트 잔재물 등을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용출기준

(단위: mg/L)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비고: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나) 중금속 등 함량기준

(단위: mg/kg)

항목	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kg당)
카드뮴	12.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	16.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화합물	120.0 이내

비고: 각 항목은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7) 정수처리오니로 요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사용하는 (11)(나)②에서 정한 철 외의 대체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조된 요업제품은 (6)(가)의 용출기준과 (나)의 중금속 등 함량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1)(나)② 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단위: mg/kg)

항목	함량기준(1kg당)
㉞납	150.0 이내
㉟구리	800.0 이내
㊱카드뮴	50.0 이내
㊲비소	50.0 이내
㊳수은	2.0 이내

* (6)(가)의 용출기준

(단위: mg/L)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비고: 용출농도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 (6)(나)의 중금속 함량기준

(단위: mg/kg)

항목	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kg당)
카드뮴	12.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	16.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화합물	120.0 이내

비고: 각 항목은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8) 소성과정을 거쳐 폐패각을 가공한 폐패각 분말을 황토폐장, 황토미장, 황토블럭 등 시멘트 대체용 경화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패각 분말은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관한 공정시험기준의 함량실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납·구리·비스·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 (6)(나)바닥재를 이용한 요업제품의 중금속 함량 기준 이내

* (6)(나)의 중금속 함량기준

(단위: mg/kg)

항목	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kg당)
카드뮴	12.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스	20.0 이내
수은	16.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화합물	120.0 이내

비고: 각 항목은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나) 수소이온농도(pH) : 6.0 이상 11.0 이하

(9)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재생주물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 6.0 이상 11.0 이하

(나) 비중 : 2.3 이상 2.8 이하

(다) 이물질 : 무게비율로 1.0 퍼센트 이하

(라) 납·구리·비스·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및 6가크롬화합물: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일 것

(10) 폐석고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시멘트 응결지연제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무수황산: 무게비율 38.0퍼센트 이상

(나) 수용성 인산: 무게비율 0.1퍼센트 미만

(다)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일 것

(11)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나)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함량단위: mg/kg)

구 분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①철 대체원료의 경우	1,000 미만	3,000 미만	60 미만	500 미만	2.0 미만
②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150 미만	800 미만	50 미만	50 미만	2.0 미만

(다) (나)에도 불구하고 철 대체원료 중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함량단위: mg/kg)

구 분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①동 제련소 발생 슬래그	3,200 미만	10,000 미만	100 미만	900 미만	2.0 미만
②아연 제련소 발생 슬래그	7,000 미만	14,000 미만	60 미만	500 미만	2.0 미만
③제철소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분진(철 성분 함유) 및 오니(습식 방지 시설 포집된 것으로 철 성분이 함유)	4,000 미만	3,00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2.0 미만

(12) 규소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실리카폼)을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만을 재활용 할 수 있다.

(13) <생 략>

나) R-4-5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철도용 폐반침목의 경우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벤조(a)안트라센	(나)벤조(a)피렌	(다)다이벤조(a,h)안트라센	(라)기름성분
시험결과 (미만)	3 mg/kg	3 mg/kg	3 mg/kg	0.35% (중량비 기준)

(2) ~ (4) <생 략>

다) R-4-6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생략>

(2) 폐아이스프로필알콜을 제외한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 등을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업용으로만** 제조할 수 있으며,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 납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나) 비소와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다) 수은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라) 카드뮴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마) 크롬과 그 화합물: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
- (바) 증발찌꺼기: 무게 비율로 0.1퍼센트 이하

(3) <생략>

라) R-4-7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 (2) <생략>

마)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 (6) <생략>

바) R-4-10 유형의 재활용 기준 <생략>

다.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1) R-5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5-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생략>

나) R-5-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생략>

다) 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 (4) <생략>

2) R-6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6-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나) R-6-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녹화토를 생산하는 경우 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 부속공정을 거쳐야 한다.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유형>

마.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1) R-8 유형의 재활용 기준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유형>

2) R-9 유형의 재활용 기준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및 바이오디젤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함

가) R-9-2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 (3) <생략>

(4) 폐식용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R-9-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유형〉

다) R-9-5 유형의 재활용 기준

(2) 유기성 오니, 커피찌꺼기 및 버섯폐배지의 저위발열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바. 제품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R-10-1 유형의 재활용 기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적합한 폐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해설

-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검토
- 비산먼지, 악취, 침출수 또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폐기물의 성상이 분진 상태로서 수집·운반·사용 등 과정에서 비산되어 주변 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 ※ 관련법령: 비산먼지(대기환경보전법령), 악취(악취방지법령), 침출수(폐기물관리법령), 환경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수질오염물질)]

참고법령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과정에서 배출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 법령의 조치기준은 아래와 같음.

1. 비산먼지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사업

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2. 악취

가.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시설

나.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배출허용기준

다. 처리 및 저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3. 침출수

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

4. 환경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시설

2)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처리 및 저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방지시설을 이용

나. 수질오염물질

1)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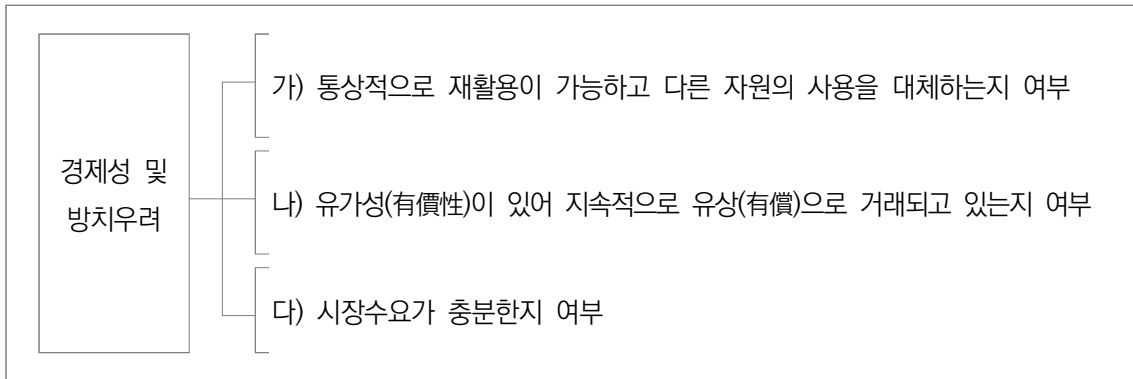
2) 처리 및 저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방지시설을 이용

나 |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본 기준은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폐기물은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으로 거래되어 방치되거나 버려질 우려가 없는 것을 의미

1) 고려사항

- ☑ 폐기물이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2) 고려사항별 해설

가)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해설

- ◇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거나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지 않는 경우 공급 및 수요 불안정으로 방치될 우려가 높음. 검토방법은 다음과 같다.
- ◇ 통상적으로 재활용 가능여부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특정용도로 재활용이 제한되는지, 다양한 재활용 방법이 있는지 검토

나)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해설

- ◇ 유가성 및 유상거래 여부는 다음의 자료 중 확인 가능한 어느 하나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폐기물에 대한 국내 가격조사자료
 - 예) 물가정보,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등 시장가격조사기관이나 사업자단체에서 공포한 가격조사자료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용도가 동일한 폐기물에 대한 관할(시·군·구) 지역 또는 전국의 실제 유통가격 조사
 - 순환자원 인정신청 사업장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거래명세서,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된 해당 폐기물의 실제 거래 가격
 - ◇ 유상거래 여부 검토 시 운반비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순환자원 인정신청 물질 또는 물건의 판매비용을 기준으로 검토
 -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전환을 유도
 - 순환자원 인정 시 수집·운반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
-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이용 ⇒ (순환자원) 일반 화물차량 이용

다) 시장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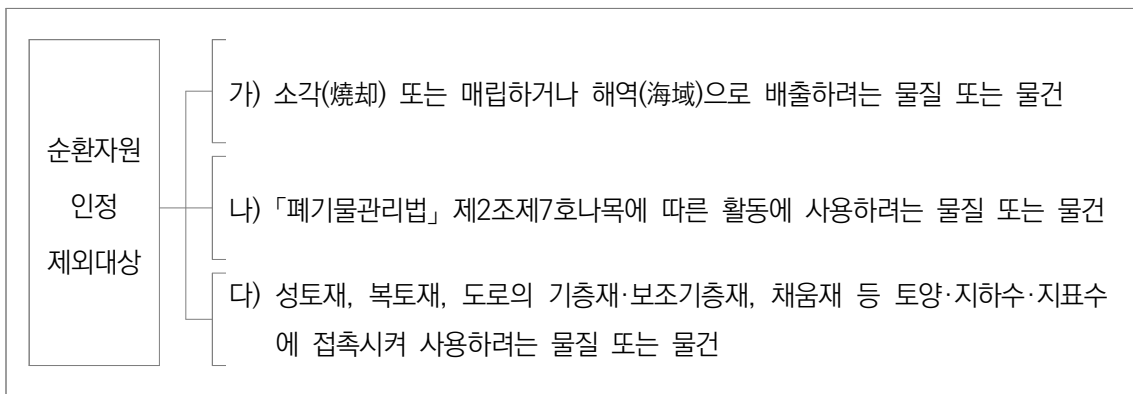
해설

- ◇ 시장수요 여부는 다음의 자료 중 확인 가능한 어느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검토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전국 폐기물통계조사 등 통계조사자료
 - 관할 지역 내 시장 규모(배출자 및 수요자 현황)
 - ※ 시장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신청 물질 또는 물건의 최근 3년간의 재활용실적을 참고하여 검토.

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본 기준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소각, 매립 또는 에너지 회수,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는 활동으로 사용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

1) 고려사항



2) 고려사항별 해설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설

-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을
 - 소각(燒却)하거나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회수 등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 ◇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적용에서 제외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
 -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

참고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7호나목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제1호: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가연성 고품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일 것.
 -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 이상일 것.
 -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품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품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화, 코크스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①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재활용제품**)

10.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품연료제품

나. **바이오 고품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품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

3) 폐목재류(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 철도용으로 사용된 받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

4)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굴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5) 초본류 폐기물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폐기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12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120 이하
발열량	kcal/kg	수입 고형연료제품: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000 이상				
수분 함유량	wt. %	10 이하		25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0.6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00 이하			
	비소(As)		5.0 이하			
	크로뮴(Cr)		70.0 이하			
회분 함유량	wt. %	15 이하				
염소 함유량	wt. %	0.5 이하				
황분 함유량	wt. %	0.6 이하				
바이오매스	wt. %	95 이상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5호)

제2조(품질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2.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BD100)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구 분	품질기준	시험방법
지방산메틸 에스테르함량(무게%)		96.5 이상	KS M 2413, EN 14103
인화점(°C)		120 이상	KS M ISO 2719
동점도(40°C, mm ² /s)		1.9 이상 ~ 5.0 이하	KS M ISO 3104
잔류탄소분(무게%)		0.1 이하	KS M ISO 10370
황분(mg/kg)		10 이하	KS M 2027
회분(무게%)		0.01 이하	KS M ISO 6245
동판부식(50°C, 3h)		1 이하	KS M ISO 2160
필터막힘점(°C)		0 이하	KS M 2411
밀도(15°C, kg/m ³)		860 이상 ~ 900 이하	KS M 2002
수분(무게%)		0.05 이하	KS M ISO 12937
고형불순물(mg/kg)		24 이하	EN 12662
전산가(mg KOH/g)		0.50 이하	KS M ISO 6618
총 글리세롤(무게%)		0.24 이하	KS M 2412
모노글리세라이드(무게%)		0.80 이하	KS M 2412
디글리세라이드(무게%)		0.20 이하	KS M 2412
트리글리세라이드(무게%)		0.20 이하	KS M 2412
유리글리세롤(무게%)		0.02 이하	KS M 2412
산화안정도(110°C, h)		6 이상	EN 14112
메탄올(무게%)		0.2 이하	EN 14110
알칼리 금속 (mg/kg)	(Na + K)	5 이하	EN 14108, 14109
	(Ca + Mg)	5 이하	EN 14538
인(mg/kg)		10 이하	EN 14107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해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을

-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

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폐기물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이물질 기준(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53호) 제2조) 등의 충족여부를 검토

해설

-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은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53호)」 제2조에 따른 이물질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준수사항 등)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별표5의3) 준수여부를 검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맞게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지 검토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경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집·운반, 분리, 보관 등의 기준 준수여부를 검토
- ◇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맞게 순환자원의 용도를 인정하고 순환자원은 인정 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유통·사용할 수 있음
- ◇ 인정받은 용도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
 -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정받은 순환자원은 100%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용도로 사용

참고법령(기준)

◇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53호)」 제2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함

1. 폐지류

-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무게기준으로 3% 이하
- 나. 종이 제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무게기준으로 5% 이하

2. 폐금속류 : 무게기준으로 2% 이하

3. 폐유리류 : 무게기준으로 5% 이하

4. 폐합성수지류 : 무게기준으로 5% 이하

※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함

1. 공통기준

가. ~ 나. <생략>

다.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규격 이외에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 등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비료)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 (사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전제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는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1)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2) **폐기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 3) **폐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가.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 1) R-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이하 생략)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을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 (별표 5)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
 - (별표 11) 단미사료의 성분등록 사항
 - (별표 16)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 (별표 18) 사료사용 제한물질
 - (별표 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등 기준 준수

◇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을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적합하여야 함**
 -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 (별표 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에 따라 재활용이 완료된 이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잉고트(성형제품)·압축상태의 **중간가공폐기물**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 인정신청대상**에

해당(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종이팩

-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 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 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것만 해당한다)
- 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 나.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6.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영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라.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의 제조[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kg)당 6천킬로칼로리(kcal) 이상이어야 한다]
-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 사.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조
- 7. 전지류:** <생 략>
- 8. 타이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 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 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 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바.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 사.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遮水材)로 이용
-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 9. 윤활유:** <생 략>
- 10. 형광등:** <생 략>
- 11.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생 략>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폐기전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온도교환기(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2. 디스플레이기(100cm ²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생략	생략
5. 태양광 패널	해체·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생략	생략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폐자동차(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 차. <생략>

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해야 한다.

2. 파쇄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는 파쇄하여 철, 비철금속류와 파쇄잔재물을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파쇄잔재물은 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위하여 폐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파쇄잔재물은 재활용 용도와 에너지회수 용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라. 분리된 파쇄잔재물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이 포장되고 파쇄잔재물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마.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3. 파쇄잔재물재활용자

가. ~ 나. <생략>

4. 폐가스류처리업자

가. ~ 바. <생략>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방법 준수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 2. <생략>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 3 <생략>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 7) <생략>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 7) <생략>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 2) <생략>

4 ~ 6. <생략>

참고법령(사용용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맞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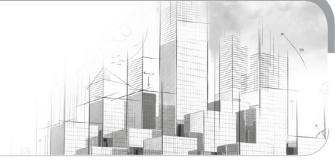
※ 예시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여부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R-1, R-2, R-3-2,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2	폐합성고무류	R-1-1, R-2-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R-1-1, R-2-1,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9-1, R-10	해당
51-03-04	폐폴리우레탄품류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5	양식용폐부자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R-1-1, R-2-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R-1, R-2,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3-5, R-8-1, R-8-2, R-9-1, R-10	해당
51-03-08	페어망	R-1, R-2, R-3-3, R-4-4, R-9-3, R-9-1,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R-1, R-2, R-3-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제 3 장

순환자원 인정신청

1 |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순환자원의 인정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최초 인정신청 및 재인정 절차·방법

구분	최초 인정신청	재인정 신청
인정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순환자원 재인정 신청서)
첨부서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 1호 부터 제9호 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제 1호 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인정절차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기술검토 ⇒ 전문가 자문 ⇒ 인정여부 결정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 절차 생략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
인정기간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재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최초 인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5년

가 | 순환자원 인정 신청자격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순환자원 인정신청 제외 대상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을 최종처분(매립 등)하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최종재활용업자가 생산하는 재활용제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 처리신고)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1.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 **대상 제외**
2. 별표 4의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 **대상 제외**
3.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자
4.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 4의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냉매물질이 포함된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제외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다만, 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오염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어망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6. 철도용 폐반침목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7. 다른 사람의 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표 제1호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자
9.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총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10.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1.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
12.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3.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폐패각(廢貝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나전재료, 귀걸이 및 자개 보석함 등의 장식품, 어항 장식품 등의 장식품의 용도와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 또는 같은 호 나목2)(식물성 잔재물 중 커피찌꺼기만 해당한다)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16. 폐콘크리트 공시체(供試體)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
1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또는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18.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19. 폐현수막을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장바구니, 마대,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
2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료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4항)
 :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
 : 사업장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 대상 제외(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한함)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규모(사업장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나 | 2개 이상의 신청인 공동 인정신청

□ 근거 규정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인정신청서 제출

1)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 예시) 사업장폐기물 또는 다른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전국에 분포) ⇒ 주소지 관할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분리하여 신청
- (신청인) 2개 이상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구분
 - (대표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신청서 일괄 제출하는 자(대표인) 선정
 - (신청서 제출) 대표인별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서 일괄 제출

2) 1)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자(이하 “대표인”이라 한다)는 자신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수 있음

- ※ 예시)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전국에 지점을 둔 커피전문점 등 가맹사업자) ⇒ 대표인 주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
- (대표인) 신청인별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인 중 대표인 선정
 - (신청서 제출) 대표인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서 일괄 제출
- ※ 세부내용은 부록 1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 생활폐기물 일괄 신청 절차 및 방법*(커피전문점 커피찌꺼기를 예시로 작성)” 해설서 p.125 참조

다 |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제한되는 물질 또는 물건

□ 근거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1) 소각,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에 사용하여도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

-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만을 이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을 제조하는 경우

- 3)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는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라 | 순환자원 인정절차·방법 등 간소화 대상 폐기물

□ 근거규정: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상 폐기물: 9개 품목

-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緞)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 7) 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마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서 작성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순환자원 인정 재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① 신청인	사업자명(기관명) (주)홍길동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56789			
	대표자 성명 홍길동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인천 서구 환경로 42번지 (전화번호:032-123-4567) 사업장 상 동 (전화번호:)				
② 담당자	성명 홍길동	직위 대표	전화번호		
③ 인정 신청	대상 폐기물 종류 고철	폐기물분류번호 (□□-□□-□□) 51-29-01	사용용도 금속제품 제조		
	총 생산계획(톤/년): 300톤(100톤/년)		신청기간: 2023년 5월 ~ 2025년 4월		
	년도별 생산계획	2023년 100톤	2024년 100톤	2025년 100톤	○년 ○톤
				○년 ○톤	○년 ○톤
④ 재인정 신청	종전 인정받은 순환자원 정보				
	대상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	종전 인정기간: . . . ~ . . .		
	재인정기간 : 인정종료일 기준 10일 전까지	사용용도:			
	종전 인정사항 변경여부: []유, []무	변경내용: 1.사용용도 2. 생산계획 3.기타()			
⑤ 시설현황	부지면적(㎡) 950㎡	계량시설 1식(50톤)			
	오염물질 방지설비 현황 []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침출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해당없음				
	폐기물재활용시설 없음	보관시설 및 보관 가능량 300㎡(50톤/년)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재인정 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2023년	03월	05일
OO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홍길동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인정 신청서 작성방법

- ① (신청인)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 현황(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기재
 - ② (담당자) 사업장의 순환자원 인정신청 관련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담당자 현황 기재
 - ③ (인정신청)
 - (대상 폐기물 종류 및 폐기물분류번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기재(예 고철 51-29-01)
 - (사용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을 참고하여 대상폐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예 종이제품 제조, 금속제품 제조, 버섯배지, 축사수분조절용도 등)
 - (총 생산계획) 인정신청 대상폐기물의 총 생산계획을 기재(최초로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생산계획량의 합계, 재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생산계획량의 합계)
 - (신청기간) 순환자원 인정신청기간을 기재(예 2018년 5월~2021년 4월)
 - (연도별 생산계획) 인정신청 대상폐기물의 연도별 생산계획량을 기재(최초로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생산계획량, 재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생산계획량)
 - ④ 재인정신청 : 재인정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최초 인정 시에는 작성 불필요
 - ⑤ 시설현황
 - (부지면적) 사업장부지 면적을 기재
 - (계량시설) 사업장 내 설치된 계량시설의 용량 및 대수를 기재
 - (오염물질 방지설비 현황) 사업장 내 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침출수 등의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한 방지설비를 기재
 - (재활용시설) 순환자원의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치된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탈수·건조시설 등의 재활용시설을 기재
 - (보관시설 및 보관 가능량) 생산된 순환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의 면적과 연간 보관 가능량을 기재
- 2) 첨부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중 인정신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 3) 신청서제출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구역·지방환경청

바 순환자원의 재인정 신청서 작성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순환자원 [] 인정
[] 재인정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① 신청인	사업자명(기관명) (주)홍길동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56789			
	대표자 성명 홍길동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인천 서구 환경로 42번지 (전화번호:032-123-4567) 사업장 상 동 (전화번호:)				
② 담당자	성명 홍길동	직위 대표	전화번호		
③ 인정 신청	대상 폐기물 종류 고철	폐기물분류번호 (□□-□□-□□) 51-29-01	사용용도 금속제품 제조		
	총 생산계획(톤/년): 500톤(100톤/년)		신청기간: 2023년 5월 ~ 2027년 4월		
	년도별 생산계획	2023년 100톤	2024년 100톤	2025년 100톤	2026년 100톤
				2027년 100톤	
④ 재인정 신청	종전 인정받은 순환자원 정보				
	대상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고철 (51-29-01) (□□-□□-□□)	종전 인정기간: 2018. 05. 06~2021.05.05			
	재인정기간 : 인정종료일 기준 10일 전까지 종전 인정사항 변경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유, []무	사용용도: 금속제품 제조(R-4-1) 변경내용: 2 1.사용용도 2. 생산계획 3.기타()			
⑤ 시설현황	부지면적(㎡) 950㎡	계량시설 1식(50톤)			
	오염물질 방지설비 현황 []대기 []소음·진동 []수질 []악취 []침출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해당없음				
	폐기물재활용시설 없음	보관시설 및 보관 가능량 300㎡(50톤/년)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 [] 인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인정 을 신청합니다.					
			2023 년	03월	05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OO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재인정 신청서 작성방법

①~③ “1) 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에 따라 신청정보를 작성

④ 재인정 신청

- (종전 인정받은 순환자원 정보) 순환자원 인정서를 참고하여 종전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와 인정기간, 사용용도 등을 기재
- (재인정기한)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함
- (재인정기간) 최초 인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5년
- (종전 인정사항 변경여부) 종전 인정사항(사용용도, 생산계획 등)의 변경여부를 표기(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유”)
- (변경내용) 종전의 인정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표기(사용용도 변경 시 “1”, 생산계획 변경 시 “2”, 기타 내용 변경 시 직접 기재)

2) 첨부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3) 신청서 제출: 종전에 인정을 받은 관할 구역·지방환경청

■ 재인정 신청대상

1.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중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자로서 다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2회 이후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중 2회 이후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자로서 다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사 | 순환자원 (재)인정 신청서 첨부서류

1)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첨부 서류	주요 내용
1.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	○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계획,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생산 공정 및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관리계획 등
2.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전체를 분석한 결과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생략(「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간 소화대상 물질 또는 물건) ①폐지류, ②폐금속류, ③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④폐합성수지(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 ⑤폐의류, ⑥폐섬유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⑦식물성 잔재물(「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 ⑧왕겨 및 쌀겨, ⑨커피찌꺼기
3.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 분석결과서	○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53호)」 제2조에 따른 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한함 - 대상폐기물 :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4.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관련 용도 및 방법 등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생략(「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간 소화대상 물질 또는 물건, 식물성잔재물은 제외) ①폐지류, ②폐금속류, ③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④폐합성수지(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 ⑤폐의류, ⑥폐섬유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⑦왕겨 및 쌀겨, ⑧커피찌꺼기
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실적 자료	○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실적 자료 ※ 3년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인정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폐기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처분(소각 및 매립) 및 재활용(열적 및 물적) 등 그 처리방법이 다양 · 최근 3년간 용도별 재활용실적은 해당 폐기물이 '물질재활용 자원'으로의 가치가 충분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첨부 서류	주요 내용
6. 폐기물 재활용 관련 위(수)탁처리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 및 판매가격 등이 기재된 서류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조공정 또는 재활용시설의 공정도
8.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방지시설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방지시설 명세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생략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간소화대상 물질 또는 물건) ①폐지류, ②폐금속류, ③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④폐합성수지(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 ⑤폐의류, ⑥폐섬유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⑦식물성 잔재물(「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 ⑧양겨 및 쌀겨, ⑨커피 찌꺼기
9.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중 해당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정보 확인 미동의 시 해당서류 사본 첨부)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당하는 사항 제출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해당하는 사항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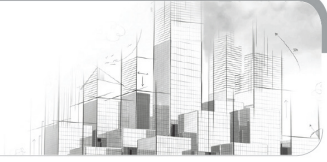
2) 순환자원 재인정 신청 시 첨부할 서류(「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 가)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실적
- 나) 순환자원의 생산·관리계획서
- 다) 직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순환자원 인정절차·방법 등 간소화 대상 제출 생략 서류

- 위 표의 2, 4, 8번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식물성잔재물의 경우에는 4번과 관련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원료에 대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확인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①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여부, ②순환자원 인정 신청제한 해당여부, ③첨부서류 구비여부, ④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적정여부 등을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한다.(「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기재사항이 잘못되거나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에 앞서 신청인에게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6항)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신청서류 확인결과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가 |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 여부 확인

1)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이 “1.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자격(해설서 p.64)”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확인사항

-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제1호
 - 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인지 여부
 - ②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허가받은 업에 맞게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그 사업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폐기물 또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③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의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인지 여부
 -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라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자 중 신고대상 규모 이상인 자는 신고를 했는지 여부, 신고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지 여부 등

나 | 순환자원 인정신청 제한 물질 또는 물건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 소각,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에 사용하여도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

-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만을 이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품 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을 제조하는 경우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는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 |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류 누락 검토

1) 인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검토

가) “1.마.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작성(해설서 p.71)”을 참고하여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검토

나) 인정신청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번호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다) 사용용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와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유형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라) 부지면적, 계량시설, 오염방지시설, 재활용시설, 보관시설 및 보관가능량 등의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검토

기재사항 누락 여부 주요검토 사항

- 기재사항 중 폐기물의 종류, 부지면적, 재활용시설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예)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등

2) 제출서류 누락여부 검토

가) “1.사. 순환자원 (재)인정 신청서 첨부서류(해설서 p.75)”을 참고하여 제출서류 누락여부를 검토

나) 특히 제출 서류 중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는 법령에서 정한 양식은 없으나,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순환자원의 품질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 포함내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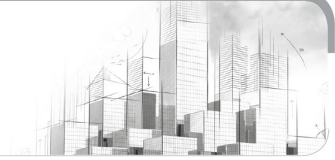
- 순환자원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품질정책 및 품질목표
- 순환자원의 원료로 사용되는 투입폐기물 관리계획
-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계획(판매처별 순환자원 사용용도 포함)
-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품질관리 계획
- 순환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공정 및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보유현황 등

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 인정 신청자에게 제출받은 서류의 누락 및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제 4 장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1 | 서류검토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신청서류를 검토하여야 함(「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조)
 - 인정신청 폐기물의 종류, 사용용도
 - 인정신청 폐기물의 성상 등 시험분석결과
 - 인정신청 폐기물의 유상거래 여부
 -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 등
- ◇ 서류검토 결과 신청인이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순환자원의 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음

최초 인정신청 및 재인정 신청 검토사항

구분	최초 인정신청	재인정 신청
서류검토	순환자원 생산 및 관리계획서	순환자원 생산 및 관리계획서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시험분석결과서	〈생 략〉
	폐기물의 종류, 사용용도 및 기준 검토	〈생 략〉
	유상거래 실적 자료 * 위·수탁 처리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유상거래 실적 자료 *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실적
	폐기물 배출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공정도	〈생 략〉
	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및 악취 방지시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간소화대상 물질 또는 물건은 생략	〈생 략〉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생 략〉
	-	최초 인정 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인정신청 폐기물의 종류, 사용용도 및 기준 등 검토

- 가)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제한되는 물질 또는 물건 여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나) 인정신청 폐기물의 사용용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용도(소각, 매립, 해역배출, 매체접촉형, 에너지회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 순환자원 인정 신청한 사용용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후 재활용승인을 득한 이후 인정신청이 가능

- 다) 인정신청 폐기물의 사용용도를 확인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에 맞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검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예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등의 재활용기준 검토

2) 인정신청 폐기물의 유해물질 등 환경안전성 검토

- ✔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등은 제출된 시험분석결과서로 확인하고 함유기준 등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

3) 인정신청 폐기물의 유상거래 여부 검토

- ✔ 최근 3년간 판매가격 및 판매량, 거래처 현황 등을 위(수)탁처리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된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시장가격동향자료(물가정보자료,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자료 등)를 통해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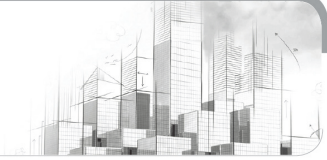
4)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 검토

- ✔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적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5) 1)부터 4)까지의 서류 검토결과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음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7호)」 제5조(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제5항]

2 | 현장조사



최초 인정신청 및 재인정 신청 검토사항

구분	최초 인정신청	재인정 신청
현장조사	육안검사 및 공정검사 등 현장조사 실시	〈생략〉

1) 육안검사 및 공정검사 등 현장조사(「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가) 인정신청 서류 검토를 완료한 순환자원 인정신청 사업장

나)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공정 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정 등 검사 생략 대상 물질 또는 물건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제1항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 ※ 제7호에 따른 식물성잔재물은 공정 등 검사 실시

2) 계획수립

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육안검사 및 공정 등 검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현장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기술검토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조사방법

가) 육안검사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현장과의 일치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한다.

육안검사 항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인정신청 폐기물의 형태와 성질을 확인하여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인정신청 폐기물의 배출 또는 보관 장소를 확인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가 확인 되는지 여부
- 신청인의 제출한 순환자원의 생산·관리계획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
 - ※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신청대상 폐기물의 성상, 배출특성, 처리방법 등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일부**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5조제1항]

나) 공정 등 검사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따른 순환자원의 생산을 위한 공정, 설비·장비 및 품질관리 체계 등이 현장여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한다.

공정 등 검사 항목

- 순환자원의 생산을 위한 공정이나 시설·장비 등이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순환자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제출한 순환자원의 생산·관리계획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

4) 이물질 및 유해물질 등의 함유여부에 대한 분석

가) 분석 대상

- 현장조사(육안검사 또는 공정검사) 시 이물질, 유해물질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예시: 인정신청 시 제출한 분석결과서와 현장여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유해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용기류 등이 혼합된 경우 등)
-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이물질 함유량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나) 이물질 함유량 분석

- 순환자원의 이물질 범위
 - “이물질”이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폐기물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 ※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락카·폐농약·폐유독물·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하여야 한다.

-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기준

① 폐지류

-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 종이 제조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② 폐금속: 무게 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

③ 폐유리: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④ 폐합성수지: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량 시험방법 등

① 시험기구

국가검정을 필한 계량저울을 사용하며, 영점 확인 후 소수점 2째 자리(소수점 3째 자리 절사)까지 측정한다. 다만, 폐금속류의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에서 측정할 수 있다.

② 시료 채취 방법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에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준용하여 다음 표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폐기물 보관 형태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시료채취 위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분리·선별 또는 재활용공정 등을 거친 폐기물을 제품 제조의 원료 또는 재료로 **출고하기 전 보관시설에서 채취**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종류	시료 채취량
폐지류	100kg/회 이상 5회
폐금속류	화물차량 한 대 분(1톤 이상)
폐유리류	50kg/회 이상 5회
폐합성수지류	50kg/회 이상 5회

③ 시험방법

채취한 시료의 총 중량을 계량하고 이물질의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선별 또는 시료 질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를 활용한 분리·선별·절단 이후 이물질의 중량을 계량한다.

④ 이물질 함량 계산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며, 5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경우 시료별 이물질 함유량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회 이상의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text{이물질 함유량(\%)} = \frac{\text{이물질의 중량(kg)}}{\text{시료 전체의 중량(kg)}} \times 100$$

이물질 함량 시험방법 예시

■ 폐금속류

- 시료채취차량 준비

순환자원 인정신청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 이상의 화물차량(집게차량 포함)의 화물적재장소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화물차량의 무게를 계량

- 시료채취

재활용공정(선별 등)을 거쳐 판매를 위하여 보관중인 폐금속류를 순환자원 인정신청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 포크레인, 집게차량의 집게, 로더 등을 이용하여 시료채취차량에 상차한 후 무게를 계량

- 이물질 선별

시료채취차량에 적재된 폐금속류를 상차에 사용된 장비를 이용하여 적재된 폐금속류를 하차(하차 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이물질은 시료채취차량에 남겨 두고 하차)

- 이물질 채취

폐금속류 하차 후 시료채취차량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하차된 폐금속류 중 육안으로 확인된 이물질을 채취하여 계량

- 이물질 함유량 측정

- 시료채취 전 청소를 마친 시료채취차량(5톤 카고크레인 차량 기준)의 공차 중량(A): 11,500kg
- 시료채취 후 상차를 완료한 차량 중량(B): 13,500kg
- 시료전체의 중량: 공차중량(A) - 시료상차중량(B) = 2,000kg
- 선별된 이물질 중량: 28kg[시료채취차량에 남은 이물질(8kg), 육안으로 확인 후 분리한 이물질(20kg)]
- 이물질 함유량: $28\text{kg} / 2,000\text{kg} = 0.014 = \underline{1.4\%}$

■ 폐종이류

- 사용용도: 종이 제조용

- 시료채취

재활용공정(선별 등)을 거쳐 판매를 위하여 보관중인 폐종이류는 보관형태 및 장소에 따라 좌·우·전·후·상·중·하 고르게 1회에 100kg 이상 씩 5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

- 이물질 선별 및 함유량 측정

채취된 시료에서 육안으로 폐종이류 외 이물질을 선별하여 이물질 함유량 산출

- 이물질 함유량 측정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시료중량	100kg	100kg	100kg	100kg	100kg
이물질중량	3kg	0.5kg	2kg	1.5kg	3.5kg
최대·최소값 제외		○			○
이물질함량	$(3\text{kg}+2\text{kg}+1.5\text{kg})/300\text{kg}=0.02166 \times 100=2.166\% \approx \underline{2.16\%}$				

다) 유해물질 함량 분석

-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량기준

-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③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량 시험방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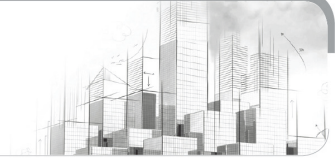
- 유해물질 함량 분석 생략

- ①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을 생략한다.
- ② 다만 육안검사 결과 폐기물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유해물질 함량 분석 생략대상 물질 또는 물건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제1항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3 | 기술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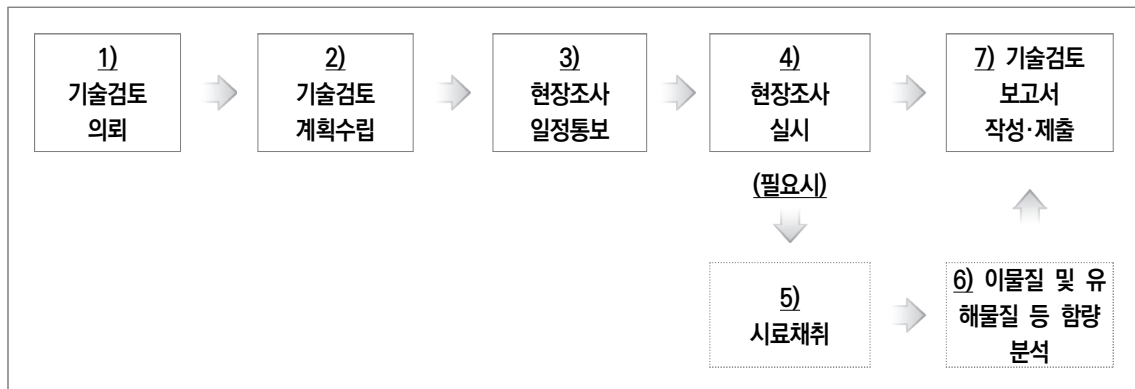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절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초 인정신청 및 재인정 신청 검토사항

구분	최초 인정신청	재인정 신청
기술검토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생략〉

가 | 기술검토 절차



1) 기술검토 의뢰: 유역·지방환경청장 ⇄ 기술검토기관의 장

가) 기술검토 의뢰대상

: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기준충족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술검토 생략 대상

- 왕겨 및 쌀겨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954호('21.6.4) 「왕겨 및 쌀겨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 추진방안 알림」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표준기술검토서(왕겨 및 쌀겨)”를 활용,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기간을 단축
- 순환자원의 재인정 신청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2조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기술검토 의뢰방법

: 기술검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순환자원 인정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일체를 기술검토기관으로 송부

2) 기술검토 계획수립: 기술검토기관의 장

- ☑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우선 신청서류에 대한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육안검사 및 공정검사 등 현장조사일정 및 절차·방법 등 기술검토 계획을 수립한다.

3) 현장조사 일정통보: 기술검토기관의 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순환자원인정 신청인

- ☑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육안검사 및 공정검사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 및 순환자원인정 신청인 등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 ☑ 현장조사 일정을 정한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순환자원인정 신청인에게 조사일정 및 조사절차·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현장조사 실시 및 이물질·유해물질 등 함량 분석 등

- ☑ 현장조사인력은 기술검토기관의 기술인력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 및 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 현장조사는 “제4장 2. 현장조사(해설서 p.86)”에서 제시한 육안검사 및 공정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2. 현장조사(해설서 p.86)”에서 제시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 이물질 및 유해물질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2. 현장조사(해설서 p.86)”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시험·분석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5) 기술검토보고서 작성·제출: 기술검토기관의 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신청서류 검토와 육안검사 및 공정검사,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의 기술검토를 완료한 경우에는 “나. 기술검토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따라 기술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기술검토보고서는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기술검토를 의뢰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한 제출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제출기한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 기술검토보고서 작성방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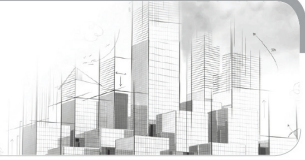
1)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 ✔ 순환자원의 기준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순환자원인정 신청서류(신청서+첨부서류) 검토결과
 - 육안검사 및 공정검사 등 현장조사 결과
 - 인정신청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충족여부
 - 그 밖에 순환자원의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기술검토보고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세부항목	작성방법
I. 개요	1. 순환자원 인정신청 사업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현황(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등) ○ 부지,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현황(순환자원 생산시설, 장비 및 운반차량, 기술인력 현황 등)
	2. 인정신청 폐기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신청 폐기물 현황(종류, 성상, 발생량 또는 생산량 등) ○ 대상 폐기물 현황(발생량, 재활용량, 사용용도 및 재활용기준 등) ○ 대상 폐기물 유통정보(유통가격 및 유통량 등)
II. 기술 검토	1. 신청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 신청서류 보완현황
	2. 현장조사 실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개요(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현장조사 참석자 등) ○ 현장조사 결과(육안검사 및 공정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형태 및 성질, 이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여부 · 신청인이 제출한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 등 -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시료채취 및 현장분석 여부 검토 등) ○ 현장조사 사진
	3.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결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결과 확인 ○ 육안·공정검사 시 시료를 채취한 경우 분석결과 확인 및 최초 분석자료 비교 등 ○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검토(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 분석)
	4.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기본법령에 따른 인정기준(환경성 등 4개 항목)별 충족여부 검토 ※ “제2장 순환자원 인정기준”(순환자원 인정기준별 해설) 참고
III. 기술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검토기관의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검토보고서 작성에 참고한 법령, 서적, 보고서, 논문 등 참고문헌 기재

4 | 전문가 자문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최초 인정신청 및 재인정 신청 검토사항

구분	최초 인정신청	재인정 신청
전문가자문	전문가 자문위원회 실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간소화대상 물질 또는 물건은 생략	〈생략〉

가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 자문위원회의 구성(「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 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의 순환자원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 및 자원순환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기술검토 결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람 중에서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자원순환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자원순환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2) 자문위원회 운영

- 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위원 중에서 8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회의에 출석으로 의견을 받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나) 회의 또는 서면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 전문가 의견 생략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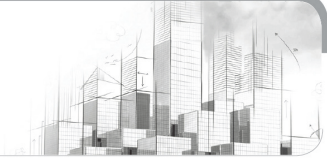
-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생략한다.

전문가 의견 간소화(생략) 대상 물질 또는 물건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절차·방법의 간소화)제1항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 2)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2조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재인정 여부 검토 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인정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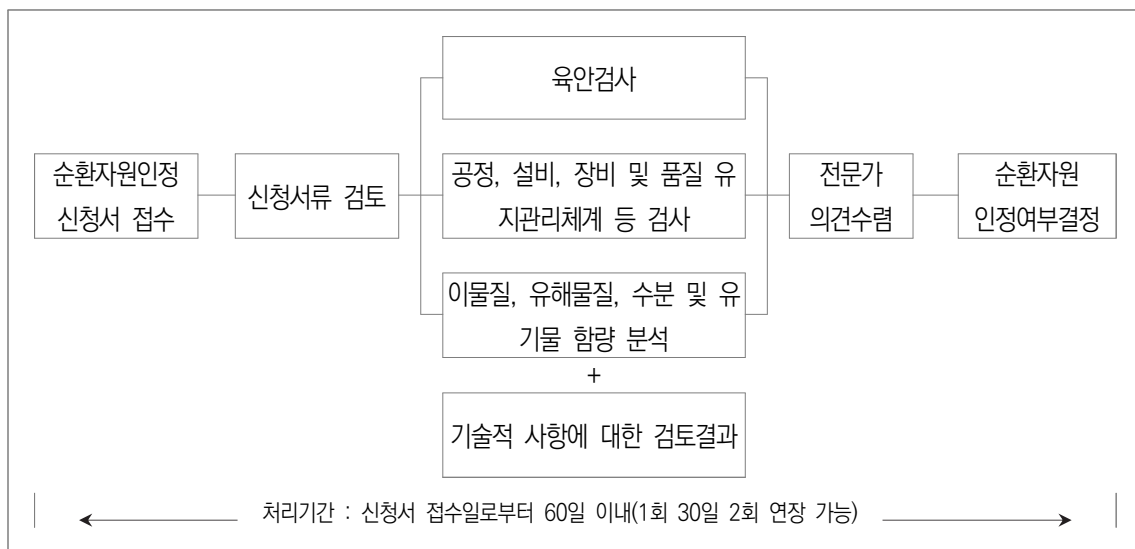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한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초 인정신청 및 재인정 신청 검토사항

구분	최초 인정신청	재인정 신청
인정여부 결정	인정여부 결정 및 순환자원 인정서 발급	재인정여부 결정 및 순환자원 인정서 발급

1) 순환자원의 인정여부 결정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인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조사,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순환자원의 인정여부 결정 통지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여부 결정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순환자원 인정결과 통보 및 게시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의 인정결과(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순환자원 인정내용 등)를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의 인정 시 그 내용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 정보센터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에 알려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게시하여야 한다.

순환자원 인정결과 공고 절차 및 방법

- (게시시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장이 유역·지방환경청장로부터 순환자원 인정결과의 공고를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 (게시방법)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내 게시판 및 업체정보 메뉴를 통해 공고
- (게시내용)
 - 게시판 : 순환자원의 인정 및 불인정을 결정한 신청인 정보(인정신청 폐기물 종류,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등)
 - 업체정보 : 순환자원 인정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순환자원 인정내용			
				대상폐기물 (분류코드)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톤/연)	인정기간 (인정일)
1							
2							

4) 순환자원 인정서 발급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 ✔️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에 대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다.
- ✔️ 2개 이상 신청인(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이 공동으로 인정받은 경우

-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7호)」제10조제2항,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매뉴얼 알림(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08호, 2022.04.08.), “2개 이상의 같은 종류 생활폐기물 인정절차 및 방법”(해설서 p.125 참고) 등을 참고
 - 인정서 기재사항 및 별첨 자료 등 확인
 - 순환자원 인정서(대표신청인 현황) + 인정세부현황(인정사업장 세부현황 별첨)

☑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 방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순환자원 인정서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길동자원(123-45-67890)**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홍길동(1972.12.31.)**
3. 사업장소재지: **인천 서구 환경로 42**
4. 인정기간: **2023. 05. 03. ~ 2025. 05. 02.**
5. 인정내용

대상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고철 (51-29-01)	금속제품 생산 (재활용유형 : R-4-1)	450톤(인정기간 동안 생산계획량 합계)
(□□-□□-□□)		

위 폐기물을「자원순환기본법」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방법

1. 사업장명: 순환자원 인정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포함) 기재
2. 대표자명: 순환자원 인정 사업장 대표자명 기재(생년월일 포함)
3. 사업장소재지: 사업장 주소를 기재(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상세주소까지 기재)
4. 인정기간: 순환자원 인정일로부터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2회 이후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을 기재
5. 인정내용:
 - 대상폐기물의 종류: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 포함)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기재
 - 사용용도: 대상폐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용도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른 재활용유형 등을 참고하여 **사용용도 및 재활용유형을 기재**
 - 생산계획량: 인정기간 동안 순환자원 생산계획량을 기재(최초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일로부터 3년 동안의 생산계획량, 2회 이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의 생산계획량의 합계를 기재)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 ✔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7호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순환자원인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변경신고서는 기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6)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가)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방법에 관한 고시」제13조)

(1) 기재사항 변경 대상

- (가) 사업장명 및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나) 인정내용 중 생산계획량이 변경된 경우
- (다) 인정내용 중 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 또는 폐지류인 경우 그 지종(紙種)

※ 기재사항 변경 대상외의 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함
- 사업장소재지, 인정기관, 사용용도 등

(2) 변경신고서류

- (가) 순환자원인정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252호)」 별지 제1호 서식]
- (나)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
- (다)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순환자원 인정서 재교부 대상

- (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 인정서를 소실 또는 분실한 경우
- (2)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3)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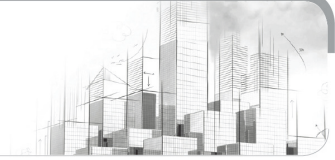
다) 처리절차



제 5 장

순환자원 사후관리

1 |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 보고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08호(2022.04.08.)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매뉴얼 참조]

- 대표인(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생산·판매실적 취합)은 자신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인정서를 발급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1)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나)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다) 제출기관: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라) 보고내용

(1) 순환자원 생산내역: 순환자원의 종류, 생산량(톤/년)

(2) 순환자원 판매내역: 순환자원의 종류별 판매량, 판매금액, 사용용도별 판매처 등

(3) 순환자원 보관량

2)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작성방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년도]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①사업자명	길동자원		②대표자 성명	홍길동		
③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④인정서 번호	제 12132 호		
⑥소재지	인천 서구 환경로 42 (전화번호 : 032-590-1234)					
⑥순환자원 인정대상 폐기물: 고철, 폐지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압축기	30hp	2020.01.15	인천 서구 환경로 42		
⑧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내역						
생 산 내 역			판 매 및 보 관 내 역			
순환자원 종류	생산량 (톤/년)	판매량 (톤/년)	판매금액 (백만원)	사용용도	판매처	보관량 (톤/년)
고철	500.00	450.00	157	금속제품 제조	대한제철(인천 동구 중봉대로 60, 032-590-3456)	50.00
폐지	150.00	150.00	15	종이제품 제조	대한제지(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00, 032-560-7890)	-
총 계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보고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성요령

-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자원 인정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 ⑧란은 생산·판매한 순환자원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⑧란의 판매처 기재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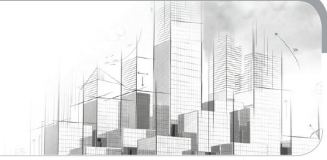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 ①부터 ⑥란은 순환자원 인정서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나) ⑦란은 사업장 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작성

다) ⑧란은 순환자원 인정서의 기재내용(순환자원의 종류, 사용용도 등)을 참고하여 당해 연도 순환자원의 생산 및 판매, 보관내역 등을 작성

2 | 출입검사 등 사후관리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08호(2022.04.08.)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매뉴얼 참조]

-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 ⇒ 관할 지역 내 1개소 이상 연간 1회 이상 실시

- 점검결과 인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표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조사결과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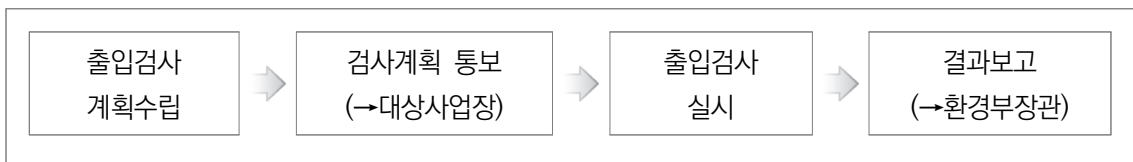
1)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기(「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6조제1항)

가) 정기점검: 순환자원 인정 유효기간 내에 연간 1회 이상 실시

※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관할 지역 내 인정사업장 중 1개소 이상)

나) 수시점검: 순환자원 인정기준 미충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절차(「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 출입검사 계획수립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검사자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

나) 검사계획 통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검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수시점검의 경우로서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출입검사 실시

순환자원 인정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인정받은 순환자원, 시설·장비 등을 검사(순환자원 인정업체 현장점검표 작성, p.111 점검표 양식 예시 참조)

라) 결과보고

- (1) 해당 연도의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제4항)
- (2) 출입검사 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7호)제17조제1항)

※ 인정 취소 절차 및 방법(청문 등) : p.113~p.121 참조

순환자원 인정업체 현장점검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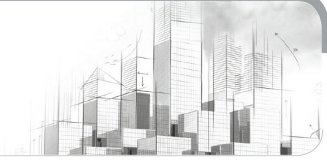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인정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순환자원 종류		인정기간	

2. 점검항목 및 점검결과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적	부											
①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과정에서 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② 순환자원 유상거래 여부 ※ 순환자원 종류별 판매단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40%;">순환자원 종류</th> <th style="width: 60%;">판매단가(원/kg)</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body> </table>	순환자원 종류	판매단가(원/kg)											
순환자원 종류	판매단가(원/kg)												
③ 사업장 내 순환자원은 다른 물질 또는 물건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점검일 현재 순환자원 보관량 : 톤													
④ 순환자원 이외의 다른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분석 필요여부 확인													
⑤ 순환자원은 인정받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사용용도 : ※ 공급업체 :													

3 |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또한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인정을 취소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10조제1항)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 나)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순환자원의 인정신청 시 제출한 순환자원 인정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첨부된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인정신청 또는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더 이상 경제성이 없어져 장기간 유상으로 거래되지 못하여 버려지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 등이 변경되었거나 삭제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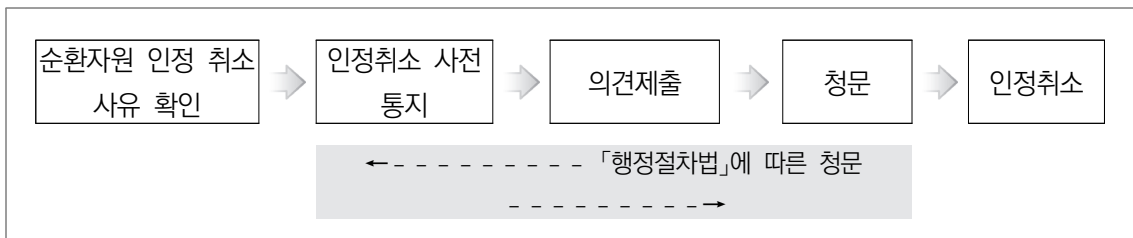
2)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절차(「자원순환기본법」 제30조 제1호)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 대표인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각기 다른 경우로서
-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청문을 거쳐 대표인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업장의 순환자원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인정취소 절차



3)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통보(「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 ②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광역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③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장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④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인정이 취소된 자의 조치사항

☑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인정 취소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순환자원을 적정하게 처리
- ②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한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8호

-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③ 해당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해당 사실의 통보와 필요한 경우 순환자원의 회수

④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1)~(3)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결과보고서를 인정을 취소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등 첨부)

☑ 폐기물처리결과보고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작성방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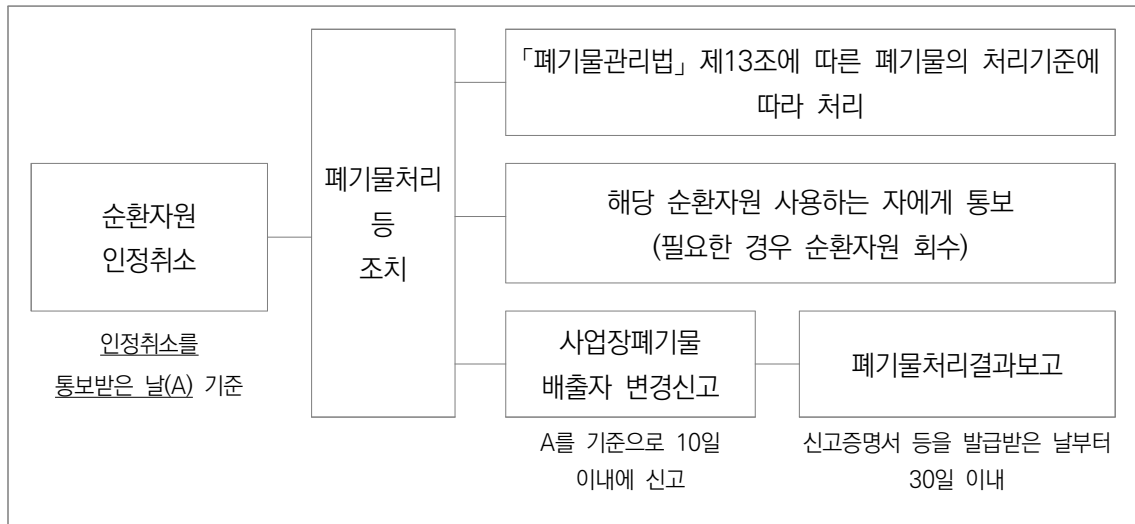
폐기물처리결과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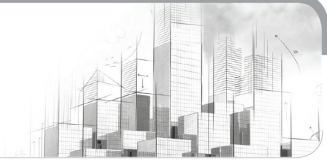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① 신고인	사업자명 길동자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 성명 홍길동			대표자 생년월일 1972.12.31				
	주소	본사 인천 서구 환경로 42 (전화번호: 032-123-4567)						
사업장 상 동 (전화번호:)								
② 순환자원 인정 취소내용	취소사유 *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취득, 2. 순환자원 기준 미충족			취소일자(취소를 통보받은 일자) : 2023.09.01				
	대상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보관량(톤)			
	폐의류		51-27-03		100톤			
③ 폐기물 처리결과	폐기물		운반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년/톤)
	폐의류	51-27-03	대한자원	100톤	위탁	한국국류	재활용	100톤
		□□-□□-□□						
		□□-□□-□□						
	□□-□□-□□							
처리완료일	2023.09.30							
<p>「자원순환기본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취소에 따른 폐기물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09월 30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p>								
첨부서류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6항)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①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자 현황을 기재
- ② (순환자원 인정취소내용)
 - 취소사유: 해당하는 취소사유에 따라 “1” 또는 “2”를 기재
 - 취소일자: 취소를 통보받은 날짜(취소 통보 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재
 - 대상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보관량 등의 순환자원 인정취소 내용을 기재
- ③ (폐기물처리결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폐기물의 종류와 운반 및 처리현황 등을 기재
 - 폐기물처리완료일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④ (첨부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5) 인정취소에 따른 조치절차



4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하고, 청문주재자 선정은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136호)에 따라 선정

1)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2)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청문절차

가)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사전 통지

(1)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처분(순환자원의 인정 취소)의 제목
- (나)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다)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인정취소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라) (다)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마)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바) 의견제출기한

(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 (1)(바)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청문기일 1일 전까지)
- (3)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가)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나) 처분대상자의 접수 거부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당사자 의견제출

- (1) 순환자원의 인정취소 당사자는 청문 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3) 유역·지방환경청은 당사자가 말로 의견 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4)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청문주재자 선정[“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136호)]

- (1)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소속직원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다.
- (2) (1)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 및 그 지휘계통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
- (3)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청문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사전에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 (4)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라) 청문

(1) 청문의 진행

- (가)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나)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 (다) 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 (라)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마)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그 청문 일에 청문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2) 증거조사

- (가)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나) 증거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①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 ②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③ 검증 또는 감정·평가
 - ④ 그 밖에 필요한 조사
- (다) 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 (가) 청문주재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제목
 - ② 청문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 ③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 ④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⑤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 ⑥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 ⑦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 ⑧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청문주재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청문의 제목
- ② 청문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 ③ 종합의견
-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청문의 종결

(가) 청문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나)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라)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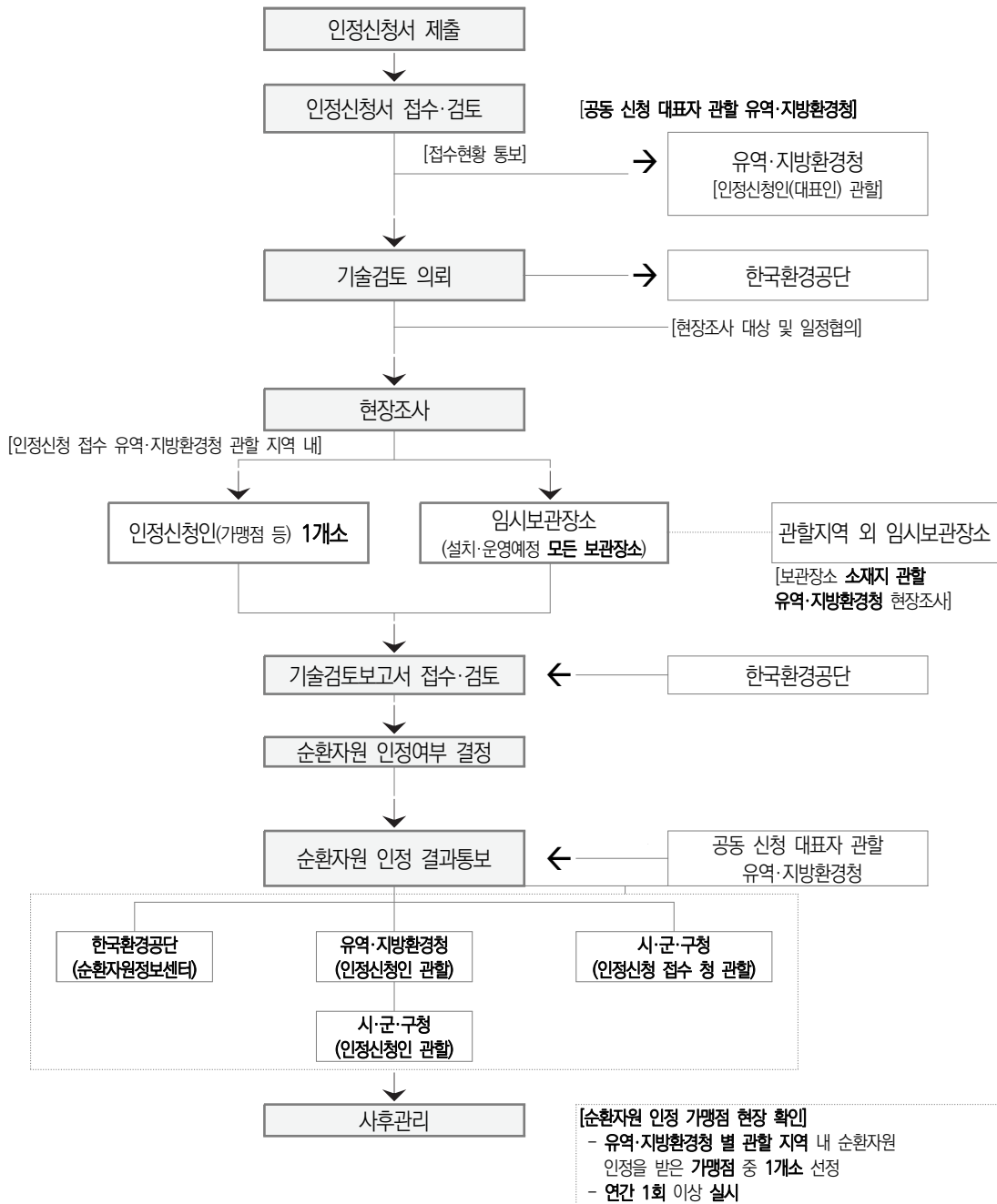
(마) 유역·지방환경청은 청문을 할 때에 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록

1. 2개 이상 신청인이 같은 종류 생활폐기물 일괄신청 절차 및 방법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3. 자원순환기본법령
4.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5.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6. 순환자원 인정제도 Q&A
7. 순환자원 인정 관련 기관 연락처

1.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 일괄 신청 (커피전문점 커피찌꺼기를 예시로 작성)

■ 인정절차·방법



1 인정신청

- ①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커피찌꺼기, 한약찌꺼기 등)
- ② 신청인 :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개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 커피전문점, 한의원 등)
- ③ 대표신청인 :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자**

※ 대표신청인 예시

구 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개인 커피전문점
대표신청인	본사 대표 또는 대표 커피전문점	개인 커피전문점 중 대표 커피전문점

- ④ 신청서 제출 : **대표 신청인 관할 구역·지방환경청**

- ⑤ 구비서류

㉠ 순환자원인정신청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서 작성방법(커피찌꺼기 예시)

- (신청인) 대표신청인 현황(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 기재
- (담당자) 대표신청인 담당자 현황 기재
- (인정신청)

· 대상폐기물 : 생활폐기물 중 식물성잔재물(91-17-00)

· 사용용도 : 퇴비 등 사용용도* 기재

* 사용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 중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른 용도에 적합한 용도

분류 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및 세부분류	사용용도
91	커피 찌꺼기	- (R-2-2)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17		-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01		- (R-4-5)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

분류 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및 세부분류	사용용도
		- (R-4-8) 동·식물성 유지나 비누 등 유지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
		-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	○
		-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
		-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
		-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
		-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 (토양개량제)
		-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제외대상	×
		- (R-9-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품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 ※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바이오 고품연료제품에 한함(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	○ (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에 한함)
		- (R-9-3)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수소 등의 기체, 액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제외대상	×
		-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	○ (바이오디젤에 한함)
		-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제외대상	×
		- (R-10)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용도**(해당자에 한함)

- 총생산계획 및 연도별 생산계획 : 신청인(가맹점 등)별 커피찌꺼기 생산계획(발생량) 합계 기재
- 시설현황 : 임시보관시설을 설치·운영(계획 포함) 하는 경우 보관시설 및 보관량 기재
 ※ 신청인(가맹점) 현황 첨부 *별첨1.신청서 첨부자료(Excel)

신청인 관할 지방 환경관서	신청인 관할 지 방자치단체		신청인 (가맹점 또는 상호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원두사용계획 (kg/연)			순환자원 생산계획 (kg/연)			임시 보관 장소 명
	시·도	시·군·구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계			00개소										
한강 유역환경청													
낙동강 유역환경청													
금강 유역환경청													
영산강 유역환경청													
원주 지방환경청													
대구 지방환경청													
전북 지방환경청													

㉠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 순환자원 생산 및 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 커피 제조 및 커피찌꺼기 발생과정
- 연도별 커피원두 사용 및 순환자원(커피찌꺼기) 생산계획('23~'25)
- 순환자원(커피찌꺼기) 판매계획('23~'25) : 판매계획량, 판매단가, 사용용도, 판매처 등
- 순환자원 운반 및 보관방법
 -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 포장 및 운반방법
 - 임시보관장소 운영계획(보관장소별 소재지, 면적, 보관가능량, 부패방지 조치 등)

㉡ 사용용도에 따른 기준 적합 증명서류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서**(해당자에 한함)

㉢ 커피찌꺼기 용도별 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㉔ 커피찌꺼기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순환자원 인정 후 커피찌꺼기 공급계약서** 등 유통거래 증명서류
- ㉕ 커피찌꺼기 재활용 공정
- ㉖ 대표 신청인 사업자등록증(인정신청인별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 ⑤ 인정신청 수수료 : 인정신청인 수(40,000원/개소)에 따라 산정
ex) 공동으로 신청하는 신청인이 100개소인 경우 : 40,000원×100개소 = 4,000,000원

② 인정신청 접수 및 검토, 접수현황 통보

- ① 인정신청 수수료(수입인지) 확인
- ② 인정신청 검토 : 대표신청인 소재지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③ 인정신청 접수현황 통보 : 인정신청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 신청인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 제출서류

③ 기술검토 의뢰 및 현장조사

- ① 기술검토 의뢰 : 인정신청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성과부)
- ② 현장조사
 - (조사대상) 신청인(가맹점 등) 중 1개소 + 임시보관장소(설치 운영 또는 예정 보관시설 전체)
 - (대상선정 및 일정협의) 한국환경공단(대표신청인, 인정신청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임시보관장소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등 일정협의)
 - (현장조사)

구 분	인정신청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임시보관장소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현장 조사	신청인 1개소, 임시보관장소 (관할 지역 내)	임시보관장소
조사 참여	인정신청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대표신청인, 신청인, 보관장소 담당자, 한국환경공단	보관장소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보관장소 담당자, 한국환경공단

④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 실시 신청인, 임시 보관장소를 기준으로 작성

- ①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류 검토 : 대표신청인 및 신청인 현황,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② 현장조사 결과 : 조사일시 및 장소, 참석자, 현장사진 등

③ 순환자원 인정기준별 충족여부 검토

㉠ 환경유해성

※ 커피찌꺼기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분석 : 생략(간소화대상)

- 현장조사 실시 신청인 및 임시보관장소 커피찌꺼기 배출, 운반, 보관 상 비산 및 침출수, 부패 등 발생 우려 검토

㉡ 경제성(유상거래 여부)

※ 순환자원 인정 이전에는 대부분의 커피전문점 발생 커피찌꺼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후 생활폐기물로 처리 → 수거 후 재활용 시 kg 당 24원 절감(종량제봉투 가격 20ㄹ 490원 기준)

- 순환자원 인정 이후 본사에서 커피찌꺼기 회수 시 가맹점에게 구매비용을 지급하거나
- 본사에서 수거·보관 후 커피찌꺼기 사용업체에게 유상 매각하는 경우 유상거래 여부 충족

㉢ 인정제외 대상 물질 또는 물건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용용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폐기물 종류별 재활용가능유형) 제3호(생활폐기물)에 따른 커피찌꺼기(91-17-01)의 재활용가능유형 해당여부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된 용도

승인번호	상호	소재지	대상폐기물	재활용유형	승인일
제3호	(주)두래	제주시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R-3-4)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화장품·방향제 원료(커피오일·파우더) 제조	2018.9.3.
제14호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서울특별시	커피찌꺼기 91-17-00 (식물성잔재물)	(R-11-2) 커피찌꺼기와 폴리플로필렌을 혼합하여 합성수지 제품 제조	2022.07.21

㉤ 순환이용 기준 적합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적합여부 검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 R-4-5유형의 재활용기준 : 식물성 잔재물(커피찌꺼기로 한정한다)을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순환자원 인정여부 결정 및 통보

① 인정여부 결정

- 기술검토기관 검토결과 및 인정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결정

② 순환자원인정서 : 순환자원인정서(대표신청인 현황) + 인정세부현황(별첨)

※ 순환자원인정서 기재사항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신청인 사업장명(대표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대표신청인 성명(생년월일)

(3) 사업장소재지 : 대표신청인 소재지 *세부 인정현황 별첨

(4) 인정기간 : 인정일로부터 3년

(5) 인정내용

- 대상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구 분	기 준	개정(2022.11.29.)
사업장일반폐기물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	커피찌꺼기(51-17-25)
생활폐기물	식물성잔재물(91-17-00)	커피찌꺼기(91-17-01)

- 사용용도

- 생산계획량(인정 신청인 3년 생산계획량 합계, 톤)

*별첨2.인정서 첨부자료(Excel)

신청인 관할 지방 환경관서	신청인 관할 지방 자치단체		신청인 (기명점 또는 상 호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순환자원 생산계획(kg/연)			임시 보관 장소 명
	시·도	시·군·구					계	2023	2024	
계			00개소							
한강 유역환경청										
낙동강 유역환경청										
금강 유역환경청										
영산강 유역환경청										
원주 지방환경청										
대구 지방환경청										
전북 지방환경청										

③ 인정 결과통보

- 인정신청 접수 구역·지방환경청
 - 관할 구역 내 신청인 소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관할 구역 외 신청인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관할 구역·지방환경청에서 통보
 - 신청인 관할 구역·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순환자원정보센터)
- 인정신청 접수 구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인정 결과를 통보 받은 구역·지방환경청
 - 관할 구역 내 신청인 소재 지방자치단체(시·군·구)

⑥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 및 사후관리

① 생산·판매실적보고 : 대표신청인 ☞ 순환자원 인정 구역·지방환경청

※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기재사항

- (1) 사업장명 : 대표신청인 사업장명 기재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대표신청인 성명 기재(대표신청인 생년월일)
- (3)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4) 인정서 번호 : 인정서 번호 기재
- (5) 소재지 : 대표신청인 소재지 기재
- (6)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 인정 폐기물 종류 기재
- (7)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 임시보관시설 현황 기재
- (8)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내역
 - 생산내역 : 인정 사업장별 순환자원 생산량 합계
 - 판매 및 보관내역 : 사용용도·판매처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보관량(보관장소 별 보관량 기재)

*별첨3. 생산·판매실적 첨부자료(Excel)

- (1) 인정 사업장별 순환자원 판매 및 판매현황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관서	인정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순환자원 생산량(kg/연)	순환자원 판매량(kg/연)	순환자원 보관량(kg/연)	임시 보관 장소명
계	00개소							
한강 유역환경청								
낙동강 유역환경청								
금강 유역환경청								
영산강 유역환경청								
원주 지방환경청								
대구 지방환경청								
전북 지방환경청								

(2) 보관 장소별 보관량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관서	보관장소 명칭	소재지	보관가능량(톤)	보관량(톤)

- ② 생산·판매실적 취합 보고 : 순환자원 인정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세부현황 엑셀(Excel)자료 함께 송부(e-mail)
- ③ 통계 관리 :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성과부)
 - 유역·지방환경청 별 실적자료 취합(환경부)
 - 취합자료 송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통계 검증 및 통계 생산 반영(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 자원순환통계부)
- ④ 사후관리 : 인정사업장별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
 - 관할 지역 내 인정사업장(가맹점 등) 중 1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점검
 - 점검결과 인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순환자원의 인정 통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조사결과 보고

④ 인정취소 등

- 인정사업장에서 인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원순환기본법」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취소) 및 제30조(청문)에 따라 처분
 - ※ 인정 취소 등의 절차는 사유발생 인정사업장에 한함

7] 커피전문점 가맹점 신설 및 폐점에 따른 업무절차

① 가맹점 신설 시

- 대표 신청인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
 - (순환자원 인정신청) 1]에 따른 절차 준용하되, 사후관리 및 재인정 등의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인정기간은 동일하게 관리

- ※ 인정신청 수수료 : 신규 인정신청 가맹점별 40,000원
- ※ 순환자원 생산계획량 : 신규 인정신청 가맹점의 순환자원 생산계획량 합계
- ※ 순환자원 인정기간 : 인정일로부터 기존 순환자원 인정서에 따른 인정기간 만료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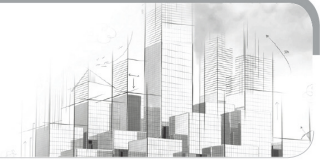
- (순환자원 인정절차) 2] ~ 4]에 따른 절차 준용하되, 기술검토 의뢰는 생략 가능
- (순환자원 인정서) 기존 순환자원 인정서 상 순환자원 생산계획량에 신규 가맹점 생산 계획량을 합계하여 기재, 인정기간 등 변경 없음

※ 인정서 첨부자료(세부인정현황) : 신규 인정 가맹점 추가하여 교부

② 가맹점 폐점 시

- 순환자원 인정서 회수 후 인정서 정정·재교부
 - 기존 순환자원 인정서 상 순환자원 생산계획량, 인정서 첨부자료(세부인정현황) 정정 후 재교부(기존 인정번호 유지)

2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 추진배경

-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²¹01.01.)
 -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폐지[정부·지자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노후화 또는 사고) 시 배터리를 해당 주소지 지자체 반납]
 - 반납의무는 폐지되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전기자동차 폐배터리(51-41-05)]로 관리되어 재사용·재활용 등을 규제
- 따라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 재이용·재제조에 따른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순환경제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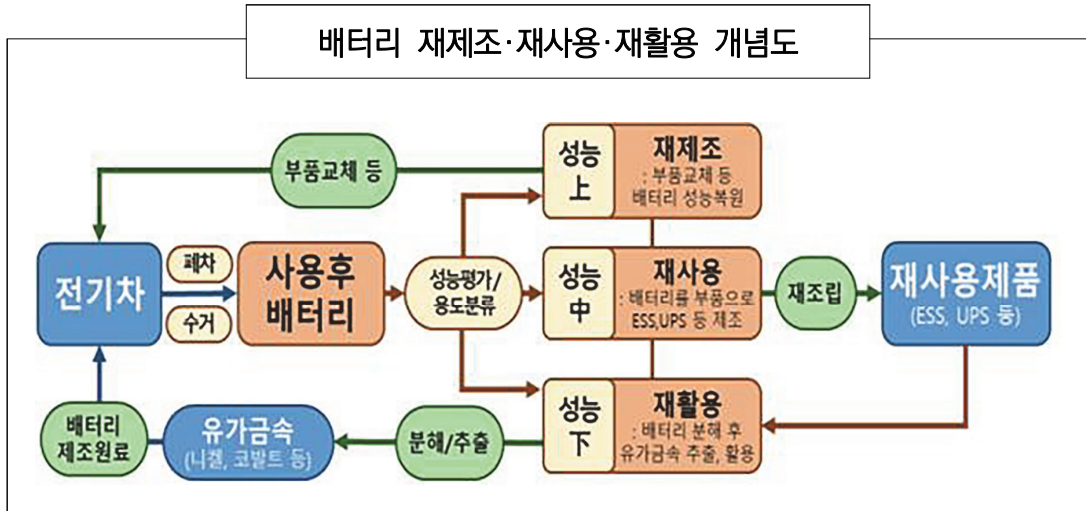
▣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조 및 재사용·재활용체계

-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조



- (셀) 전기에너지를 충전, 방전 해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의 기본단위(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을 원형·사각형의 케이스에 넣어 만듦)
- (모듈) 배터리 셀을 외부충격과 열,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배터리 조립체(ex 1개 모듈 = 12개 셀)
- (배터리 팩)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시스템의 최종형태. 배터리 모듈에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냉각시스템 등 각종 제어장치 및 보호시스템을 장착하여 완성(ex 8개 모듈 = 1개 팩)

○ 재사용·재활용체계



[자료참고]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22.9.5. 관계부처 합동)

1 인정신청

① 인정대상 : 안전성이 확보된 재제조·재사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② 인정단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분리 후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판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장, 리스·렌탈社, 정비(AS)업체, 배터리제조회社 등

③ 용도 : 재제조·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배터리**

* (재제조) 배터리를 분해-셀밸런싱-제조립 및 검사과정을 거쳐 본래 성능으로 복원(재사용) 폐배터리를 부품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상전원공급장치(UPS) 등 제품을 제조

※ 재제조 및 재사용 제품



** 셀·모듈·팩 단위로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폐배터리에 한함

④ 보관 및 운반기준 : 순환자원 인정 전·후 보관 및 운반기준 준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⑤ 구비서류

㉠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 폐배터리 생산·판매계획(재사용·재이용 계획 등 포함)
- 폐배터리 분리 및 보관·운반 안전관리계획(보관 및 운반기준에 따른 관리계획)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폐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생산제품 현황

㉣ 시설 설비 명세서

-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에 필요한 장비현황(안전장비 포함)

㉤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 재제조·재사용 목적의 매각계약서 사본

㉥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 폐배터리 배출 공정도

㉦ 폐기물 배출 관련 인·허가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② 기술검토 의뢰 및 현장조사

① 기술검토 의뢰 : 인정신청 접수 유역·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성과부)

② 현장조사

- (공통사항) 폐배터리는 다른 종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폐배터리 분리) 자동차해제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1-46호)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분리 매뉴얼 비치 여부

[배터리 분리 참고자료]

- 환경부가 제작·배포하는 매뉴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 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 전기자동차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제작한 매뉴얼

- 보호 장비 구비여부

[보호 장비]

- 고압전기 작업에 적합한 건조된 상태의 안전 고무장갑, 안전 고글, 안전 신발, 내산성 앞치마, 안전모, 안면보호구 등 개인장비
- 접착 절연 테이프, 고압 절연 고무매트, 안전막, 고압 절연장비, 고압 절연봉 등 장비

- 분리작업 장소

[분리작업 장소]

- 소방설비 등의 안전설비 여부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단단하고 틈이 없어야 하고, 전해액 등의 누출에 대비한 주변 오염방지설비 여부
-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지 여부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 내부인지 여부

- **(폐배터리 보관 및 운반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1-46호) 준수

[보관기준]

- ①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 ②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 ※ 보관방법
- ㉞ 폐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장소에 보관
 - ㉟ 고온·화기·직사광선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㊱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떨어지거나 기계적인 부하 또는 구멍을 뚫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㊲ 폐배터리를 바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압 절연 고무매트를 바닥에 깔고 정상 설치된 방향으로 보관하며 뒤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 ㉞ 폐배터리가 합선되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고압 절연 고무매트로 폐배터리를 덮어서 보관
- ㉟ 폐배터리 보관장소에는 경고 표시를 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파손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설치

[운반기준]

- ①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 ② 불연성·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상자에 담아서 다른 물질 또는 물건과 분리하여 운반

③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 ①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류 검토 : 신청인 현황,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 ② 현장조사 결과 : 조사일시 및 장소, 참석자, 현장사진 등
- ③ 순환자원 인정기준별* 충족여부 검토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개정 시행(23.1.1.)에 따른 인정기준 4개로 완화

-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 ㉡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 유상으로 거래(매매계약서 등 확인)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소각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른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51 - 41 - 05)의 재활용 유형* 중
 - * R-2-1, R-2-2, R-3-1, R-3-2, R-3-3, R-4-1, R-10
 -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용도(R-2-1~2)

④ 순환자원 인정여부 결정 및 통보

① 인정여부 결정

- 기술검토기관 검토결과 및 인정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결정

② 순환자원 인정서 교부 시 승인조건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1-41호)」에 따른 폐배터리 분리기준·방법 및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③ 인정 결과 통보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의 인정신청을 인정한 경우에 “순환자원 인정서” 발급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순환자원의 인정결과(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순환자원 인정내용 등)를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⑤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 및 사후관리

① 생산·판매실적보고 : 신청인 ⇄ 순환자원 인정 유역·지방환경청

- 판매처 및 사용용도 중점 관리

※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 (보고내용)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생산·판매량(팩 단위), 판매현황(판매금액, 사용용도, 판매처), 보관현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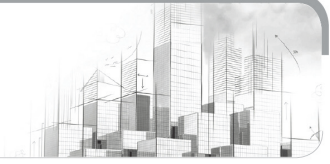
② 생산·판매실적 취합 보고 : 순환자원 인정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세부현황 엑셀(Excel)자료 함께 송부(e-mail)

③ 통계 관리 :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성과부)

- 유역·지방환경청 별 실적자료 취합(환경부)
- 취합자료 송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통계 검증 및 통계 생산·반영(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 자원순환통계부)

3 | 자원순환기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제10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1.1.] [대통령령 제33186호, 2022.12.31., 일부개정]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나.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 수분 및 유기물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緞)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별표 1]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40,000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15,000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3.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3.31., 타법개정]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제7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다음 각 목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p>첨부서류</p>	<p>1.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마.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1부 바.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1부 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1부 아. 다음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4) 「약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취방지시설 자. 다음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나목, 라목 및 아목(「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나목 및 아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2.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나.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다.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품목별 수수료 인 정: 40,000원 재인정: 15,000원</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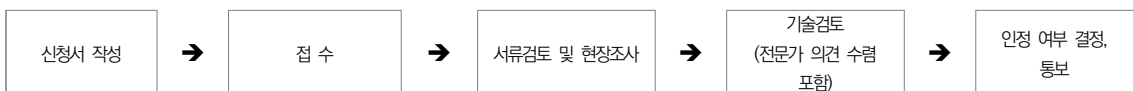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처 리 기 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순환자원 인정서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3. 사업장소재지:
4. 인정기간:
5. 인정내용

대상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		
(□□-□□-□□)		

위 폐기물을「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순환자원 인정 취소내용	취소사유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취득, 2. 순환자원 기준 미충족		취소일자(취소를 통보받은 일자):					
	대상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보관량(톤)					
폐기물 처리결과	폐기물	운반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연/톤)
		□□-□□-□□						
		□□-□□-□□						
		□□-□□-□□						
	□□-□□-□□							
처리완료일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취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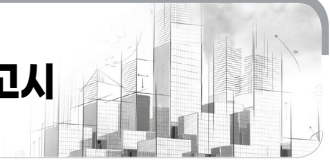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또는 같은 규칙 제18조의2 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1부(「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4.] [환경부고시 제2022-87호, 2022. 5. 4.,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기술검토키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제3조(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제4조(순환자원 인정 신청 및 접수 등) ①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신청인이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중 어느 하나가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자(이하 "대표인"이라 한다)는 각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 여부
2. 첨부서류의 적정 구비여부
3. 지방환경관서 관할 적정 여부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기재사항이 잘못되거나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에 앞서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대표인과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가 각기 다른 경우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접수 사실을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폐기물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자료조사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2. 현장조사: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 ② 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의 세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관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관계행정기관 등 의견조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다른 자원을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환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술검토 의뢰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를 위해 폐기물의 특성, 재활용 시장 동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서류가 포함된 순환자원인정신청서와 함께 서면의 방법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③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순환자원 인정기준

총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검토를 의뢰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검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인의 협조) ① 신청인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술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의 반려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자문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신청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자원순환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자원순환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8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에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또는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순환자원 인정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제4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장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공정검사
2.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육안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9조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제12조(순환자원의 재인정) ① 제10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가 다시 순환자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및 제9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업장명
2. 대표자 성명
3. 인정내용 중 생산계획량
4. 인정내용 중 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 또는 폐지류인 경우 그 지종(紙種)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
 2. 제1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정서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회수하여 정정·재교부한다.

제14조(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인정서의 소실 또는 분실
2.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15조(보고서 제출) ①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검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1. 정기점검: 순환자원 인정 유효기간 내에 연간 1회 이상 실시
- 2. 수시점검: 순환자원 인정기준 미충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인정받은 순환자원,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로서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순환자원 인정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로서 대표인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2항의 요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 2. 제1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1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장
5.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87호, 2022. 5.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방법(제5조 관련)

1. 공통 사항

- 가.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법 제9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및 경제성 충족 여부는 규칙 제6조에 따른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나.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하며, 이 경우 폐기물 관련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검토한다.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육안검사,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서류검토 방법

- 가.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 제3조에서 순환자원 인정을 제한하고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 공정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등의 서류와 폐기물 인계·인수정보 등으로 확인한다.
- 나. 제출된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를 검토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 다. 수집·운반·보관·사용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침출수 및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원, 배출 공정도 및 오염방지시설 현황 등을 검토한다.
- 라.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되는지 판단을 위해 최근 3년간 판매 가격 및 판매량, 거래처 현황 등과 시장조사 자료 등을 검토한다.
- 마. 순환자원의 사용 용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지와 영 제3조에서 순환자원 인정을 제한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에서 사용용도 및 방법, 원료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바.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와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공정도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시설·장비·기술인력 등 적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여부를 검토한다.

3. 현장조사

가. 육안검사

- 1)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이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 2)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형태나 성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집·운반·보관·사용 과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지 조사한다.
- 3)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배출 또는 반입 현황 및 보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어 있는지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나. 공정검사

- 1) 폐기물 배출 또는 재활용 공정,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기준 준수 등 지속적으로 순환자원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한다.
- 3) 순환자원 생산 공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조사한다.
- 4)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질의 규격 및 품질이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조사한다.

다. 유해물질 등 분석

- 1)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수분이나 유기물질, 이물질, 유해물질 함유량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며, 필요시 기술검토기관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 2) 이물질 함유량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 공정 특성 상 발생 단계부터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물질 함유량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⑥ 인정 연월일	년 월 일		
⑦ 인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인정내용			
대상 폐기물 종류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⑪ 변경사유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순환자원인정서 원본 2.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 |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 - 25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0호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이물질 기준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① 이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물질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②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류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가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2. 폐금속류: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

3. 폐유리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4. 폐합성수지류: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③ 폐유 · 폐유기용제 · 페페인트 · 페락카 · 페농약 · 폐유독물 · 폐석면 · 폐폴리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순환자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①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
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물질 시험방법 등(제2조 관련)**1. 시험기구**

국가검정을 필한 계량저울을 사용하며, 영점 확인 후 소수점 2째 자리(소수점 3째자리 절사)까지 측정한다. 다만, 폐금속류의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에서 측정할 수 있다.

2. 시료 채취 방법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에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준용하여 다음 표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폐기물 보관 형태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량을 조정할 수 있다.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	시료 채취량
폐지류	100kg/회 이상 5회
폐금속류	차량 한 대(1톤 이상의 화물용 차량)
폐유리류	50kg/회 이상 5회
폐합성수지류	50kg/회 이상 5회

3. 시험방법

채취한 시료의 총 중량을 계량하고 이물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선별 또는 시료의 질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를 활용한 분리·선별·절단 이후 이물질의 중량을 계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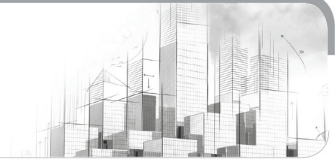
4. 이물질 함유량 계산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며, 5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경우 시료별 이물질 함유량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회의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text{이물질 함유량(\%)} = \frac{\text{이물질의 중량(kg)}}{\text{시료 전체의 중량(kg)}} \times 100$$

비고: 폐지류의 경우 시료 전체의 중량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분 함유량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6 | 순환자원 인정제도 Q&A



Q1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Answer

재활용가능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도 다른 폐기물과 같이 일률적인 규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후관리 비용과 업계 불편 초래

- 폐기물 중 환경성, 유가성 등 법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관리규제에서 제외(배출자 신고, 올바른 입력 등)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도입

Q2 외국에도 순환자원 인정제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Answer

EU는 2008년도부터 “폐기물종료제도(End of waste)”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다루고 있음

- 이를 통해 ①재활용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주고, ②폐기물처리허가 등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며, ③안전한 2차 원자재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Q3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사업장에 주어지는 혜택은?

Answer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발생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더 이상 배출·운반·보관·사용 등에 있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으며,

-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등의 규제

규 제	폐기물 배출 등 규제	관련법령									
배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시·군·구 - (신고내용)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배출 및 처리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수집 · 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 (대상)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폐기물수집·운반) 신고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는 자 · 폐타이어,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하는 자 ○ 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전용차량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제1항제1호 - 「폐기물관리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 ※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장비(전용차량), 연료장소 또는 사무실 등을 갖춤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기한(배출자) : 90일 -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폐기물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 ○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 및 처리기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0%;">보관량</th> <th style="width: 40%;">처리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재활용업자</td> <td>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이하</td> <td>60일 이내</td> </tr> <tr> <td>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등</td> <td>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이하</td> <td>30일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보관량	처리기한	재활용업자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이하	60일 이내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등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호다목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제1항
구분	보관량	처리기한									
재활용업자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이하	60일 이내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등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처리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업 허가 -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폐기물처리 신고 -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을 재활용하려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관리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 									
배출 수집 · 운반 처리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 입력 - (대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 (시기)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 마다 - (입력내용) 인계·인수 폐기물의 종류와 양 - (입력)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Q 4 순환자원의 인정기관은?

Answer

순환자원은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중요한 판단행위이므로 국가(환경부)에서 직접 순환자원 인정업무 수행

- 관할구역(사업장 소재지)별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사업장 소재지)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마산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남해군,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Q 5 순환자원 인정 신청방법은?

Answer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인정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

-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순환자원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어느 하나가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하여 제출하려는 대표인의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청

Q 6 순환자원의 인정 신청이 가능한 폐기물은?

Answer

폐기물의 종류는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환경성, 경제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확인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

※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음

Q 7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폐기물은 무엇인지?

Answer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인정대상에서 제외

-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나목*에 다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
- 2) 바이오디젤(폐식용유·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Q 8 순환자원의 인정신청부터 인정여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Answer

인정기관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최대 60일 이내)까지 결정기간 연장 가능

Q 9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인증제품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Answer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은 폐기물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재활용제품이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등 타 법령에 따라 제품으로 인증 받은 것은 폐기물이 아님

Q 10 순환자원 인정 간소화 대상 품목 및 내용은?

Answer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 한 품목은 모두 9개 품목임

-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 간소화 대상 품목은 다음의 절차 및 방법을 생략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다만, 육안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 다만, 식물성잔재물은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

Q 11 고철은 종류에 상관없이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한지?**Answer**

고철의 종류로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하는 고철의 상태가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순환자원 인정여부가 결정됨

* 주변 환경 및 인체의 유해성, 유가성, 유해물질 오염 여부 등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

※ 산업표준(KS D 2101(주철 및 강 스크랩)에 따른 강 스크랩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Q 12 고철을 수집·선별하는 고물상인데 관련 단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Answer**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자가 2개 이상 모여 단체로 신청이 가능함

- 이 경우 순환자원 인정 신청 사업장의 주소지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Q 13 고물상에서 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어디 입니까?**Answer**

관할구역(사업장 소재지)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다음의 신청서류를 갖춰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면 됨

1. 순환자원인정신청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3.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사업장 규모가 1,000㎡(특별시·광역시)/ 2,000㎡(시·군(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이상인 경우에 한함)
 4.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재활용량
 5. 고철의 매입 및 매출관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6. 폐기물의 이물질 함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7. 보관시설 현황 및 장비명세서
 8. 순환자원의 생산·관리계획서
- 참고로, “고철”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금속류에 해당되어 ①순환자원의 생산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②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③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생략됨

Q 14 식물성잔재물을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제조업체에 원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순환자원 인정신청 시 폐기물의 이물질 함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및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nswer

식물성잔재물은 이물질 함유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폐기물로 이물질분석결과서는 제출이 필요치 않으며, 간소화 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제출이 필요치 않음

- 다만, 다른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공정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유해물질분석결과서는 제출해야 함

※ 이물질 함유기준을 정한 물질 또는 물건: 폐지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Q 15 재활용업체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Answer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에 맞게 위탁폐기물을 중간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 또는 재활용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이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신청 가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 16 “순환자원”과 “재활용제품”의 차이는?

Answer

“재활용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재활용 방법 등에 따라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이미 폐기물이 아님

- 따라서, 이미 제품인 재활용제품은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이 아님

-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인정 취소 시에는 폐기물로 관리·처리해야 함

Q 17 순환자원 인정기준에서 왜 유가성이 있어야 하는지? 재활용이 가능하면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지?

Answer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폐기물 관리규제에서 제외됨으로써 폐기물로서 다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무상으로 거래되거나 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경제성이 없어질 경우 방치됨으로써 환경적 문제를 야기함

- 따라서,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유가성이 검증되는 등 방치될 우려가 없어야 함

Q 18 순환자원 인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가 있음. 실적자료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신청이 제한되는가?

Answer

폐기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처분(소각 또는 매립) 및 재활용(물질 또는 열적) 등 그 처분방법이 다양하므로, 최근 3년간 용도별 재활용실적은 해당 폐기물이 ‘물질재활용 자원’으로의 가치가 충분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 용도별 재활용 실적은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재활용실적에 대한 제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3년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인정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신규사업장의 경우 순환자원인정신청 대상 폐기물의 사용용도, 유가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한 용도별 재활용 실적 등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순환자원인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인정신청 대상 폐기물의 처분(소각 또는 매립)실적이 있는 경우 재활용시장 변화에 따른 방치우려가 높아 인정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음

Q 19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조업에서 직접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되지 않고 시장을 통해 재 유통 가능한지?

Answer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은 인정받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재 유통은 불가능

- 다만, 인정받은 용도로 다른 사업장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능

Q 20 폐지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SPS-KPRA 1501-6237, 한국제지자원진흥원)에 따라 “재활용제지 원료”로 인증 받아 영업하고 있음.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을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가?

Answer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3호 단서에 따라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53호)”에 따른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에 등록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SPS-KPRA 1501-6237(재활용제지 원료)에 따른 이물질 시험방법

- 압축베일을 천공기(원통형 드릴)로 천공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이물질 함량을 분석

Q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PET, PP, PE, PS, EPS(발포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로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정절차 및 방법은?

Answe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합성수지재질의 제품·포장재는 **재생원료** 또는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

- 따라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제8호(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할 것)에 따라

- PET, 합성수지재질 및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 재질의 폐포장재를 선별 또는 압축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경우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Q 22 2023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는데, 기준 완화에 따라 새롭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가능한 폐기물은?

Answer

그간 순환자원 인정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체상태 이외의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 오니류, 동물성잔재물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소각, 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을 제외함
- 환경안전성, 경제성(유상거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등의 4개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종류에 관계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Q 2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Answer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7호)」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3.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Q 24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커피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은?

Answer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가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가능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 ※ 커피찌꺼기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 간소화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의 구비서류 간소화
- 커피전문점 개별로 신청하거나, 2개 이상의 커피전문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제출기관
 - (개별신청) 커피전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 (공동신청)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려는 자(대표인)의 커피전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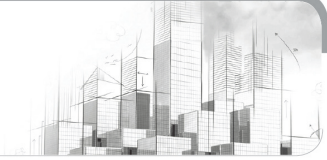
Q 25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정미소에서 벼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절차 및 방법은?

Answer

왕겨 및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정미소는 왕겨 및 쌀겨에 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순환자원 인정신청이 가능

- ※ 관련근거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590호(2021.08.27.) 왕겨, 쌀겨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추진 요청
-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에 따라 ①공정·설비 검사, ②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③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면제되며
- 사용용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왕겨 및 쌀겨(51-19-00) 재활용 유형에 맞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
 - * 예시 :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활성탄, 흡착·흡수제, 화장품첨가제, 버섯배지, 사료, 비료, 바이오 고형연료 등
-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미곡종합처리장 또는 정미소는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

7 | 순환자원 인정 관련 기관별 연락처



구 분	기 관		연 락 처
순환자원 인정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031-790-2668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055-211-1626
	금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042-865-0736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062-410-5206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047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0718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41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3, 5066, 5071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02-2284-1520